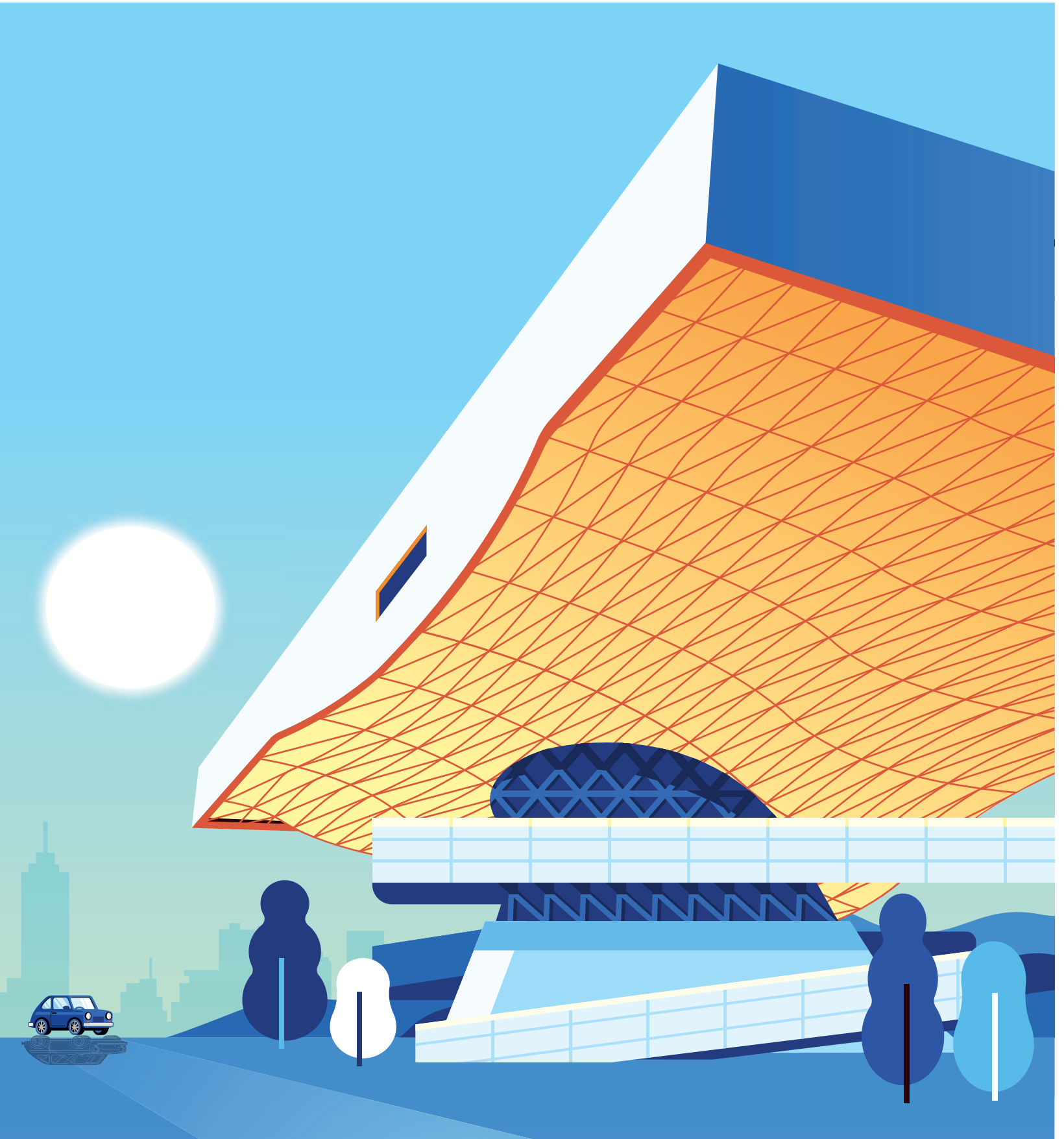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KOSCA LETTER

2020 vol.24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부드러웠던 햇볕이 피부에 따갑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둔 밤이 점차 가시고 길어진 해가 저녁을 채웁니다.
한껏 달아오른 땅을 식혀줄 비가 때때로 내리고
우거지는 녹음으로 푸른 잎이 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2020년 Vol. 24

- 표지이야기 영화의전당
- 발행인 회장 김세원
-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PART 1

- 04 권두사 김성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
 장태래 부산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PART 2

- 06 협회 소식
15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22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19년도 4/4분기 신기술 지정현황

PART 3

- 24 전문건설인의 삶 건삼인 제45호 - (주)금호지질 대표이사 허성하
 건삼인 제46호 - (주)동남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이민규
- 28 건설산업정보 - Section 01
37 건설산업정보 - Section 02
61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64 특별기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66 그것이 알고싶다 하도급 분쟁 상담소



PART 4

- 67 회원사 현황
72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SPECIAL

- 74 SPECIAL 01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75 SPECIAL 02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북
76 SPECIAL 03 생활 속 유용한 꿀팁
77 SPECIAL 04 건강지킴이
78 SPECIAL 05 부산의 명소 - 기장 임랑 해수욕장
79 SPECIAL 06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 노이슈반슈타인 성
80 SPECIAL 07 취미의 발견
81 SPECIAL 08 틈새 회화
82 SPECIAL 09 쉬어가는 유머
83 SPECIAL 10 틈새 스트레칭
84 SPECIAL 11 KOSCA 중앙회·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부산시회 2/4분기 주요 일정
85 SPECIAL 12 2020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86 SPECIAL 13 독자와 함께 - 독자의견 및 퀴즈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좋은 거래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성 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

한국경제성장의 주역인 전문건설인 여러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 김성근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1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 부임했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지면(紙面)으로나마 부산지역 전문건설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어 부산경제는 물론 한국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규모는 약 18%로 미국(10.5%), 일본(11.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매우 높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건설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국 한국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하는 등 공정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모든 정부부처가 합심하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코로나19 사태 극복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정위는 5,4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5월~9월 동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95.2%로 나타나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94.0%)에 비해 1.2%p 증가했고, 현금성 결제비율도 65.5%로 2015년 이후 5년 연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거래환경 개선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는 작년에 하도급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원사업자의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부당결정행위나 부당감액행위가 있을 경우 단 한 차례만 고발되어도 공공입찰참여가 제한(5점)되도록 벌점을 상향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그동안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회사채 등급 A0 이상)의 대금지급보증을 면제시키던 것을 이들 원사업자도 하도급업체에 지급보증을 의무화 시킨 것이 대표적인 하도급법령 개정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아직도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고 공정위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전문건설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여 전문건설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위 차원에서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전문건설인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좋은 거래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협회와 건설인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제한과 의무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해 지역건설경기가 살아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건설업의 발전과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부산지역 전문건설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지만, 코로나19로 시민생활과 지역경제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역건설산업을 이끌어 가는 공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비전사업이 많이 시작됩니다. 동남권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4년의 노력 끝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추진되며, 금융산업 혁신의 발판이 될 BIFC 3단계와 부산국제아트센터도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에코델타시티내 첫 번째 공공주택 2,800세대와 일광지구 행복주택 1,000세대도 4월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역건설 업계에 파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제한과 의무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해 지역건설경기가 살아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건설현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공사도 재정 신속집행으로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공사 선금지원 범위확대 및 기간단축, 건설현장 방역제품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올 봄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위기상황에서도 지역 건설업이 그동안 쌓아올린 기술력과 건설문화를 토대로 또 한 번의 인내와 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전문건설협회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과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 태 래

부산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제회의 및 행사

01 2020년 회장단 및 감사 신년인사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월 8일 「2020년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20회계연도 우리사회 주요 일정(안) 및 주요현안을 협의했다.



02 2020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월 13일(10: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장실) 「2020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현황, 201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일정 및 2020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안) 등을 보고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5회 정기총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03 2020년 신년인사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월 13일(11:30 / 부산전문건설회관 3층) 제11대 임원 및 대표회원, 부산광역시 건설관계관 및 협회 자문단(변호사, 노무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도전하지 않으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2020년 많은 변화와 혼란이 예상되지만, 협회와 회원사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내실을 다지고 우리의 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면 협회 창립 35주년을 맞는 2020년은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동으로 다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전하며, 2020년(庚子年)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떡케익 커팅식을 가졌다.



04 2020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월 17일(10:30 / 협회 회의실) 운영위원 15명,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등록현황, 준예산 편성·운영, 2019년도 건설공사 실적 신고 접수 일정 및 2020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 일정에 대해 보고하고,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35회 정기총회 개최일정 등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05 2020년 이웃돕기성금 고액납부 회원사 오찬 간담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2월 18일(12:00 / 포항횃집) 「2020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에서 고액 기부한 회원사 대표 10여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오찬회를 개최했다.

부산사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했고, 총 206개사가 동참했으며 4,618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협회의 성금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모금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투명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6 2020회계연도 1차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3월 19일(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2020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결과 및 협회 주요일정(안)을 보고하고, 협회 창립 35주년 기념품 선정 관련사항을 협의했다.



07 제35회 정기총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2월 4일(11:00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중앙회 김영운 회장과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이현승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등 내빈 40여명과 부산시회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세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사와 함께 하나되어 닦쳐오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부산시회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외부인사와 회원사 등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 회원사 수상자 명단

국토교통부 장관상



천지개발(주)
임철규 대표이사

협회 중앙회장상(우수회원사)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대표
(공로상)



거북건설(주)
이주상 대표이사
(공로상)



선광건설(주)
임채병 대표이사
(기술상)

부산광역시장상(2019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우수건설업체)



(주)제일공사
박수근 대표이사



(주)라이프하우징
이형민 대표이사



민성건설(주)
서영철 대표이사



(주)비엠
배미애 대표이사



(주)화성건설
변용규 대표이사

부산광역시장상(2019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우수건설인)



강호건설(주)
강성호 대표이사



(주)연동
반백철 대표이사

협회 부산광역시회장상(우수회원사)



(주)삼성도장
이관욱 대표이사



(주)국토건영
차수열 대표이사



(주)진성디이
박철훈 대표이사



(주)동남엘리베이터
이민규 대표이사



(주)부근건설
신종근 대표이사



백송산업(주)
강병우 대표이사



(주)방도기업
정용채 대표이사



예인건설(주)
허성규 대표이사



(주)아랑존디
우범용 대표이사



(주)원석조경
정진우 대표이사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01 부산광역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 간담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 및 회장단은 1월 17일 부산광역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부산지역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건설자재 생산업체 및 장비 임대업체의 동반성장과 건설근로자 고용 창출로 부산지역 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은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부산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02 부산광역시 김민근 건축주택국장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2월 10일 부산광역시 김민근 건축주택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부산지역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민간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로 민간건설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은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건설공사를 통해 부산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시공을 전담하고 있는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회장동정

01 KOSCA 중앙회 2020년 신년인사회 참석

김세원 부산시회장(중앙회 부회장)은 1월 5일 중앙회(회장 김영운)에서 개최한 ‘2020 KOSCA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경자년(庚子年) 협회발전을 위한 기념 떡 컷팅식을 가졌다.





사회공헌활동

01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조기극복 성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3월 6일 부산광역시청 시장실을 방문하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를 통해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부산지역에 많은 확진자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민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통해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 및 회장단은 3월 26일 해운대구청을 방문하여 홍순헌 구청장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사)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대구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예방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에 지원될 예정이다.



03 부산광역시 동구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 및 회장단은 3월 26일 동구청을 방문하여 최형욱 구청장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e바우페이’ 구입에 지원될 예정이다.



04 2020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 결과

부산사회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회원사 모두의 온정을 전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월 2일부터 2월 13일 까지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6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4,618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으며, 성금은 부산시교육청 무상급식 지원, 취약계층 생계(연탄지원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기탁할 계획이다.

2020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여 회원사 명단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	(주)세원이엔지	김세원	3,000,000
2	(주)에이비엠	김병철	1,000,000
3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1,000,000
4	강호건설(주)	강성호	1,000,000
5	거북건설(주)	이주상	1,000,000
6	(주)덕재건설	김운석	1,000,000
7	동림건설(주)	최문학	1,000,000
8	삼지건설(주)	이태원	1,000,000
9	새벽건설(주)	김정수	1,000,000
10	(주)신아건설	윤정필	1,000,000
11	(주)제일공사	박수근	1,000,000
12	(주)천진	심재복	1,000,000
13	(주)청북건설	정귀자	1,000,000
14	태영건설(주)	박판용	1,000,000
15	태영토건(주)	진성희	1,000,000
16	(주)흥산건설산업	강용호	1,000,000
17	옥산건설(주)	유재봉	500,000
18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500,000
19	(주)주일건설	박강일	500,000
20	(주)건양산업	정종원	500,000
21	건진개발(주)	심수물	500,000
22	광평건설(주)	주한식	500,000
23	(주)금원건설	정영군	500,000
24	(주)금호지질	허성하	500,000
25	라이프조경(주)	전종훈	500,000
26	(주)비엠	배미애	500,000
27	(주)연동	반백철	500,000
28	영빈건설(주)	김재진	500,000
29	(주)에멕	김정환,신상호	50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30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최상대	500,000
31	(주)진성디이	박철훈	500,000
32	천지개발(주)	임철규	500,000
33	(주)테크유니온	신유정	500,000
34	(주)사오건설	오태진	450,000
35	(주)성덕건설	김경식	300,000
36	(주)대신산업개발	박성열	300,000
37	(주)대양산업건설	오종출	300,000
38	(주)보광	윤영갑	300,000
39	(주)보륜건설	김현재	300,000
40	(주)봉조건설	조홍제	300,000
41	(주)삼신퍼스틸	임호성	300,000
42	(주)서한기업	서쌍철	300,000
43	석봉건설(주)	한상호	300,000
44	(주)신승산전	정장효	300,000
45	신신이앤지(주)	고정자	300,000
46	(주)아인디자인	반종규	300,000
47	야후건설(주)	김병흠	300,000
48	(주)에이탑이엔지	정병진	300,000
49	옥상건설(주)	박동호	300,000
50	(주)한수유니텍	손영규	300,000
51	거보건설(주)	정영만	200,000
52	(주)공간조경	정석봉	200,000
53	(주)금정토건	문준식	200,000
54	다림조경(주)	이경훈	200,000
55	(주)대영이엔씨	석재원	200,000
56	(주)라이프하우징	이형민	200,000
57	명작건설(주)	박정구	200,000
58	(주)방도기업	정용채	20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59	(주)분도이엔지	박나래	200,000
60	(주)수진건설	김승규	200,000
61	승화건설(주)	김영운	200,000
62	신평건설(주)	정길찬	200,000
63	예인건설(주)	허성규	200,000
64	조이엔지니어링	조진숙	200,000
65	토암건설(주)	남기태	200,000
66	해진건설(주)	이상호	200,000
67	원원건설	전형문	170,000
68	가양건설(주)	김기량	100,000
69	(주)가진건설	이만희	100,000
70	고려토건(주)	이미영	100,000
71	(주)국토건영	차수열	100,000
72	금강가구(주)	김정규	100,000
73	(주)금강고려하우징	권동근	100,000
74	(주)금광개발	김진영	100,000
75	(주)금광환경	김형준	100,000
76	(주)금신건설	문정찬	100,000
77	(주)금하수도	김은주	100,000
78	(주)금호창호	윤석균	100,000
79	녹화조경(주)	김점식	100,000
80	다운FP	전우영	100,000
81	(주)다용건설	박상용	100,000
82	다풍건설(주)	태상덕	100,000
83	(주)대명건설	송중섭	100,000
84	대명토건(주)	강진구	100,000
85	(주)대왕석재	양정식	100,000
86	(주)대정이엔씨	김미진	100,000
87	동남창호(주)	나기주	100,000
88	(주)동명도장	안형필	100,000
89	(주)동서이엔지	손성윤	100,000
90	(주)동아피앤씨	홍종욱	100,000
91	동우기업	최원용	100,000
92	(주)디노건설	배성훈	100,000
93	(주)디엠플랜	박형용	100,000
94	(주)마인	정일섭	100,000
95	(주)미강	장종준	100,000
96	백송산업(주)	강병우	100,000
97	범창종합건설(주)	임영희	10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98	(주)보성건설	변기홍	100,000
99	(주)부근건설	신종근	100,000
100	부민건설산업(주)	현승훈	100,000
101	(주)빅인테리어	김상열	100,000
102	사직건설(주)	배병윤	100,000
103	(주)삼강기업	정은재	100,000
104	(주)삼영건장	조윤설	100,000
105	(주)삼진공영	박춘삼	100,000
106	상화건설(주)	정인호	100,000
107	서연개발(주)	박세웅	100,000
108	(주)서해건설	전홍석	100,000
109	섬진건설(주)	박종열	100,000
110	(주)성심	정진상	100,000
111	(주)성우기술단	박세정	100,000
112	(주)성환이앤씨	조운영	100,000
113	(주)신승원텍	박찬호	100,000
114	신우개발	김문곤	100,000
115	신창건영(주)	노현숙	100,000
116	(주)신희산업	강신모	100,000
117	(주)아코아디에스	유제순	100,000
118	에스엔케이건업(주)	김장우	100,000
119	(주)우영이엔지	서진숙	100,000
120	(주)원석조경	정진우	100,000
121	(주)원태건설	지미선	100,000
122	유니시스템창호(주)	성환진	100,000
123	(주)유영토건	최기남	100,000
124	(주)유진기업	추태석	100,000
125	유창중건설	김영주	100,000
126	(주)이화기술단	이봉재	100,000
127	(주)일상건설	김철호	100,000
128	재은건설(주)	박인경	100,000
129	재흥건설(주)	김경래	100,000
130	(주)정우석재	송우철,이종건	100,000
131	(주)중부건업	김석태	100,000
132	(주)창성공영	안병호	100,000
133	(주)청산산업	강성구	100,000
134	태성토건(주)	김기목	100,000
135	태우건설(주)	이명희	100,000
136	(주)태은건설	양현숙	100,000

협회 소식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37	(주)태현이엔지	박영철	100,000
138	(주)통영산업건설	강재준	100,000
139	한국라이텍개발(주)	황성도	100,000
140	한림정공(주)	강정민	100,000
141	(주)한서개발	이삼규	100,000
142	(주)한일개발	이종철	100,000
143	해송이앤씨(주)	박남이	100,000
144	(주)해코	이근옥	100,000
145	(주)현성건설	이재근	100,000
146	홍산건설(주)	신상기	100,000
147	(주)화성건설	변용규	100,000
148	휘람건설(주)	주무은	100,000
149	(주)흥림건설	강갑균	100,000
150	화성포장건설(주)	노대환	60,000
151	경민건설산업(주)	김규철	50,000
152	경신산업개발(주)	정순덕	50,000
153	(주)고센건설	지재성	50,000
154	광민건설(주)	최형선	50,000
155	(주)국일안전	최화자	50,000
156	(주)국일에스에프건설	이기덕	50,000
157	(주)금천엔지니어링	장상철	50,000
158	(합자)기경건설	황봉욱	50,000
159	(주)나움디자인건설	김은희	50,000
160	(주)남도말물	김세동	50,000
161	남우산업개발(주)	황규진	50,000
162	(주)다담건설	김옥경	50,000
163	(주)대명에스씨아이	정현영	50,000
164	대산건설	신현상	50,000
165	대성산업종합환경	박쌍윤	50,000
166	(주)대오건설산업	신봉수	50,000
167	(주)동건씨앤씨	변재식	50,000
168	동경개발건설(주)	김미옥	50,000
169	(주)두로건설	윤종길	50,000
170	(주)디케이산업	이순창	50,000
171	(주)디케이산업	이순창	50,000

연번	상호	대표자	모금액
172	명산건설(주)	노은정	50,000
173	명산건설(주)	노은정	50,000
174	(주)미주건설	박은희	50,000
175	민성건설(주)	서영철	50,000
176	(주)벽성기업	최철식	50,000
177	(주)벽진피엔티부산	이상배	50,000
178	보라건설조경(주)	김성희	50,000
179	부강개발(주)	고천석	50,000
180	부영ENG	손문기	50,000
181	(주)부영건설	김진출	50,000
182	산양건설(주)	정진갑	50,000
183	서연건설(주)	황경숙	50,000
184	설원건설(주)	박정두	50,000
185	(주)성남그랜드사시	김현숙	50,000
186	(주)성신창업	김홍수	50,000
187	성훈건설(주)	김철훈	50,000
188	수영석재산업(주)	문기찬	50,000
189	(주)아랑존디	우범용	50,000
190	(주)영진종합토건	박기석	50,000
191	원토건설(주)	김순애	50,000
192	(주)유정기업	이상헌	50,000
193	은진개발(주)	조증언	50,000
194	(주)제이에이치안전	김현석, 박진희	50,000
195	지오인테리어(주)	홍순박	50,000
196	진옥건설(주)	위성출	50,000
197	창비토건(주)	장명순	50,000
198	(주)청호이.엔.지	손승욱	50,000
199	(주)태벽건설	백성효	50,000
200	(주)피엔씨	홍봉준	50,000
201	하나해상개발(주)	임창수	50,000
202	한미피앤씨(주)	김영덕	50,000
203	한일금속공업사	주병규	50,000
204	(주)해신석재	조영철	50,000
205	(주)현대금속	구자천	50,000
206	(주)호승윈스피아	김찬복	50,000
합 계			46,180,000

수주지원

01 2020년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추진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포기각서 사전 징구, 추가공사 불인정, 이면계약서 작성 강요 등 각종 갑질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거래질서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의 횡포는 건설시장을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부실공사 예방,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및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도입·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2019. 4. 24일 「민선7기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정비율(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적용이 힘들 경우 발주부서의 감사관실 “사전컨설팅” 감사 검토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1월 2일,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발주예정 공공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02 화장실 개·보수 등 실내 리모델링공사 실내 건축공사업 발주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53곳,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1,037곳에 협조 추진

부산시회는 1월 8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부산지역 사회복지관(53곳),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1,037곳) 등에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교사보수공사, 리모델링 등) 발주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건축물 내부 개·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의한 전문건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산시회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발주하는 교사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사는 보수·보강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내건축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부산시회의 지속적인 건의 결과, 실내 개·보수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의 입찰에 시설물유지관리업뿐만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되고 있으며, 향후 동 공사의 입찰에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해 본다.

03 건설공사 설계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품의 할증 반영 추진

부산시회는 1월 28일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및 건축사회 회원, 건설공사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산지역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품의 반영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품의 할증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부산광역시건축사회에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품의 반영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품의 할증 적용 협조”

적정이윤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설계내역서 상 설계품이 현실과 맞지 않게 낮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 포기에 따른 부정당 재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회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에 건축사회 회원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용역을 받아 설계서 및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품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사의 지세별, 지형별 또는 해당 공종별 작업현장 여건(철거, 굴곡, 경사지 등)을 고려한 품의 할증을 설계에 반영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 부산건축사회 회원 및 부산지역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업체에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 품의 반영 및 품의 할증 적용 협조”

발주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받아 설계서 및 내역서 작성시, 발주기관의 일률적인 예산절감에 맞춰 설계하기 보다는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품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세별, 지형별 또는 해당 공종별 작업현장 여건(철거, 굴곡, 경사지 등)을 고려한 품의 할증을 적용하여 설계해 줄 것을 협조하였다.

■ “건설공사 입찰참가 전 설계서 및 내역서 사전 확인 당부” 회원사에 안내

더불어, 시회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산출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을 사전 열람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적자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 중도포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회는 2월 5일 부산광역시 기술심사과에도 건설공사 설계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적정 품의 반영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품의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산하 구(군)청 및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04 전문건설공사 업무영역 준수 추진

아파트 각종 보수공사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토록!

부산시회는 1월 29일 부산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각종 보수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에 협조를 추진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종 중 1개의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도급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 자격에 해당 전문건설업 보유 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에 해당되는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회는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확립과 회원사의 업무영역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해당 전문건설업종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관리·감독하는 주택관리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에 협조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에서는 우리시회에서 제공한 건설업 종류별 업무범위 구분과 발주방법 등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주택관리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이 해당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시회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시회는 회원사의 수주지원을 위해 입찰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불합리하게 발주된 건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정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입찰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5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건설공사 입찰정보 적극 활용 안내

타 지역 주택 공사도 낙찰 받을 수 있어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의 일환으로 실시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모니터링을 통해,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일률적, 관행적으로 잘못 발주된 12건(6억7백만원)의 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으로 정정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회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영업지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있기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라도 타 지역 공동주택 발주공사에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건설공사 입찰정보 조회 방법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공동주택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입찰정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6 건축공사 착공 등 건설공사 정보 제공에 따른 활용 안내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으로부터 건설공사 착공정보를 통보받아 회원사의 대표 E-mail 과 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사 발주계획 및 입찰정보, 종합건설공사 수주 정보 등 건설공사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사에서는 해당 자료를 수시로 열람하여 건설공사 수주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다.

■ 건설정보 확인 방법

- 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대표 E-mail 또는 부산시회 홈페이지 (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 정보에서 확인 가능
- ※ 협회에 등록된 E-mail이 없거나 E-mail 주소를 모르시는 회원사는 부산시회 회원관리부(☎051-633-0260)에서 확인·등록 가능

■ 2020년 건설공사 정보 제공 현황

- 발주계획 현황
 - 부산광역시 등 주요 발주기관 공공공사 발주계획 2,674건 (공사예정금액: 2,335,790백만원)
- 입찰정보 현황
 - 만덕한신아파트 전지작업 입찰공고 등 2건
- 건설공사 착공정보 현황 (기준일자: 2020. 3. 25)

연번	구군청	건수
1	부산광역시 강서구	10
2	부산광역시 금정구	2
3	부산광역시 기장군	24
4	부산광역시 남구	26
5	부산광역시 동구	2
6	부산광역시 동래구	9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7
8	부산광역시 북구	1
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33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38
11	부산광역시 서구	3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24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8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9
15	부산광역시 중구	12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
계		226

○ 종합건설공사 수주정보 현황

-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급식실 현대화사업 및 기타공사 등 10건 (공사예정금액: 17,318백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 체결 협조 추진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시공사와 해당 구(군)청과의 협약(MOU) 체결 협조 추진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함께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 민간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각종 불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높은 건설현장의 경우, 상징적으로 해당 건설현장 소재지 구(군)청과 시공사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70% 이상을 명시)」을 체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시회는 2월 18일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청 건축과를 대상으로 관할 소재지 내 대형건설공사 시공사와의 협약(MOU) 체결을 협조 요청한 것이다.

08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의 2020년도 공공공사 시행계획 안내

부산시회는 2월 24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2020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 백만원)

연번	발주기관	발주건수	공사예정금액	비고
1	부산광역시	76 건	140,744	
2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374 건	364,192	
3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98 건	10,447	
4	부산광역시 구군청	763 건	381,250	
5	부산 공기업(공사, 공단 등)	349 건	226,728	
6	중앙 공기업(공사, 공단 등)	119 건	842,656	
7	부산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833 건	359,113	
8	출자·출연기관	62 건	10,660	
계		2,674 건	2,335,790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 → 발주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부산시회는 2월 10일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2019년 시공능력 평가액 업종별 상위 30% 이내인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부산광역시에 추천했으며, 대형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 → 발주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시 해당 전문건설업체 발주 추진

실내리모델링,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구거·암거보수공사 등에 해당 전문건설업 입찰참여 기회 제공 협조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실내리모델링공사, 복개구조물 및 하수박스, 구거·암거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었거나, 특허·신기술 반영, 기존의 발주관행 등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회원사 수주지원을 위해 매년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발주시 시설물유지관리업 뿐만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해당 전문건설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도 2월 26일 주요 발주기관에 동 협조사항을 추진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였으나, 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고, 공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종 이상 전문공사의 복합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신기술은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의 방법으로서 건설업의 업무영역이 될 수 없으며, 특허·신기술은 대부분 기술협약체결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만 발주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규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산시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실내리모델링, 화장실 개보수, 복개구조물·하수박스 보수보강 등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뿐만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해당 전문건설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총 78건, 약 123억원에 달하는 공사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건설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11 부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상향 조정 안내

부산시회는 부산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산하 교육지원청 포함)은 2020년 1월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윤,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제비율 요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원가 제비율 상향 적용기준

비 목	과 거 적용기준	현 재 적용기준	공사예정금액	비고
이 윤	9%	15%	140,744	※ 적용일자 : 2020. 1. 1일 이후 건설공사 발주 분부터
일반관리비	2.8%	6%	364,192	
간접노무비	5.6%	8%	10,447	
기타경비	3.1%	5.6%	381,250	

그러나 일부 학교들을 중심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향된 건설공사 제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제비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라장터 입찰공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당수 파악됨에 따라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건설공사 제비율 요율 상향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까지 변경된 공사원가 제비율이 준수되도록 공문[시설과-2605(2020.3.5.)]을 시달하였다.

12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추진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홍보문 사·구(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게재 건의

부산시회는 3월 9일 △부산광역시청 및 16개 구(군)청,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관리사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단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한 후 실내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로 인해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의 문란과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를 방해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에게는 전문건설업 등록방법과 협회 회원 가입시의 혜택 등도 함께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의 건설시장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 무등록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13 남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산전문 건설업체 참여 확대 추진

부산시회는 3월 9일 부산광역시(건설행정과) 및 남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남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했다.

부산지역에서 시행·시공예정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대부분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앙1군 대형 건설업체가 선정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수도권 자사 연고지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어, 부산시민의 분양대금 수천억원이 수도권 등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회는 지역 건설장비 및 생산 건설자재를 사용하고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가 부산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됨을 강조하며, 부산광역시 및 조합, (주)포스코건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시회는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함께 (주)포스코건설 본사를 방문하여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건설현장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14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사업 등」에 조경식재공사사업 참여 추진

산림청 지원예산 사업이라 하여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조합으로만 발주하는 것은 조경식재공사사업의 업무영역을 위반하는 규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 의거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의 사업은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동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에 조경식재공사사업을 배제하고 있어 조경식재공사사업을 등록한 우리협회 회원사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3월 27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등 조경 관련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급 되어 있는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등”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급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의 식재·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들어 도시림·도시숲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이 대기환경 개선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한 도심지역에서의 수목식재 사업인 만큼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의 개선을 추진했다.**

15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건설관련 법령 준수 협조 추진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공공 발주자의 법령 준수 철저 협조

부산시회는 3월 27일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발주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을 통한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점검 철저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추진했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
- 하도급 통보시 부당특약 유형 점검 의무
- 설계변경 내용 하수급인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홍보 등

제도개선

01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반영 추진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 실질적 적용 필요!

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는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수목관리(하자대상)에 대한 민원발생과 하자발생의 책임소재 명확화 등의 이유로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 추진계획(2015.5.21.)」을 마련하여 식재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총 식재공사비의 5% 이내로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2년간 유지관리공사를 별도 발주 시행토록 각 구(군)청 및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각 구(군)청 및 산하기관에서도 예산의 부족과 회계처리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부산도시공사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반영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1월 7일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과 함께 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협조 요청했다.

■ 부산도시공사 조경식재 유지관리비 적용 사례

-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식재공사 준공 후 초기 2년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목 등의 조기활착, 고사율 저감 및 품질향상을 통한 예산절감을 이유로 2010년 전부터 준공 후 조경식재 유지관리비를 반영해 오고 있음.
- (입찰공고전) 전체 공사금액 중 조경식재 공사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유지관리 비용의 예산을 반영
- (입찰공고시) 공고시 2년간 식재 유지보수공사 포함 명시, 내역서에 관수, 전정 등의 내역을 반영
- (계약체결) 조경식재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낙찰된 전체 공사금액으로 계약체결 후 준공 정산하고 유지관리공사를 별도 수의계약 체결
- (유지관리) 준공 후 2년간 유지보수를 하면서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 후 수령

02 부산전문건설 하도급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확정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70% 이상시 추가 6% 용적률 인센티브

부산시회는 회원사 수주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청, 언론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적용해오던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종전(70% 이상 하도급 참여시 → 3%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보다 3% 상향된 최대 6%(70% 이상 하도급 참여시)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고시명: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2019.12.25.)】

■ 개선 주요내용

현행		개선	
전문건설(하도급)		전문건설(하도급)	
참여비율	인센티브	참여비율	인센티브
90%	5%	70%	6%
80%	4%	60%	5%
70%	3%	50%	4%
60%	2%	40%	3%

■ 시행일자: 2020. 1. 1.부터

이에 시회는 상향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함께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중앙1군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회는 1월 21일 회원사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건설공사 수주 업무에 활용할 것을 안내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홍보하며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의 건설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협조 요청했다.

0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2월 17일 △민간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면제대상인 소규모공사의 범위 축소,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 현행 유지를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우리협회 중앙회 경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민간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면제대상인 소규모공사의 범위를 “1건 공사의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공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면제대상 범위를 “건설업을 등록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최소 금액 기준인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과 맞추어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1개월 이내인 공사”로 수정하여 면제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을 “10%에서 5%로 조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금액과 동일하게 현행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04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개정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3월 26일 △건설기계대여대금 공제 현실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개정내용 반영, △건설기계조종사 교체 요구기준 확대, △건설기계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 조건 현실화를 내용으로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에 대한 개정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우리협회 중앙회 경유)했다.

부산시회는 현행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대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가동 사례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미가동 공제범위를 “2일”로 개정하여 공제가 가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개정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불법행위나 계약조건 위반 등이 있을 시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체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되어야만 당사자들 간의 책임이 강조되고 정당한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05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의견제출

부산시회는 부산지역 2,000여 전문건설업체의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부산지역 최대의 사업자단체로서 매월 13만명 이상의 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노동집약산업으로서의 근로자 고용확대를 통한 부산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산지역 건설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시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부산광역시(도시계획과)에 건의했다.

■ 건설공사 계약심사시 일률적인 예산 삭감 금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발주시 계약심사부서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하고 있으나, 동 심사가 일률적인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부산광역시에서 건설공사 계약심사 담당 부서에 계도해 줄 것을 요청

■ 건설공사 품의 할증 적용을 통한 적정 품 반영

- 공공공사 건설공사 설계시 지세별, 지형별 또는 해당 공종별 현장여건(철거, 굴곡, 경사지 등)을 고려한 품의 할증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1일 시공량(8시간)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1일 시공량(8시간) 기준의 품으로 계상해 줄 것을 건의

■ 부산지역 건설공사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산지역 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7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의 준수를 건의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홍보

-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홍보 요청

2019년 4/4분기 신기술 지정현황



- 지정번호(지정일자): 874(2019.10.04.)
- 개발업체: (주)이레하이테크이앤씨, 케이에스엠기술(주), 남경건설(주), 백양엔지니어링(주), 최정필

»» 신기술명

초속경시멘트 및 아크릴계 개질 라텍스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 기술과 다기능 워터젯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HiCon-S 공법)

»» 주요 내용

시멘트 및 라텍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강도 및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속경시멘트(보통시멘트 + 속경성 시멘트 + 고로슬래그 10% + 메타카올린 5%)와 아크릴계 개질 라텍스(아크릴 에멀전 + 스티렌모노머 + 폴리메틸아크릴레이트 + 안정제 등)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 기술과 작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틸팅, 측면 절삭, 안전 거리 유지 기능을 갖는 워터젯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875(2019.10.22.)
- 개발업체: (주)세기엔지니어링

»» 신기술명

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보로 구성된 조립식 트렌치형 굴착 공법

»» 주요 내용

흙막이 패널(열연강판) 양 단부에 암부와 수부가 있어 이웃하는 패널과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패널 평면부에 부착된 너트형 구조에 고정력 볼트로 버팀 레일이 거치 또는 해체되며, 마주보는 패널의 레일에 버팀보가 설치되는 기술로서 핀(환봉)을 이용해 버팀보의 높이 조절 및 고정 가능성이 배면 토압에 저항하기 위해 터파기 전 버팀보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버팀보의 중앙과 양단의 연결부가 접이식 Hinge로 되어있어 버팀보 해체가 용이한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876(2019.11.19.)
- 개발업체: 동아이엔지(주)

》》 신기술명

H파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를 이용한 연직벽 공법

》》 주요 내용

H파일을 기초저판 없이 지반에 설치하여 기초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의 중공부에 지표면에 돌출된 H파일이 매립되도록 조립한 후 무수축 그라우트를 충전하여 결합하는 연직벽 시공 기술로서, 접합시공시 선형, 간격, 수직도에 대한 벽체 제작오차 및 시공 오차를 수용하면서 시공이 가능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벽체 끼리의 종방향 연결은 커플러와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또는 유공관 연결재를 사용하여 시공성 개선 및 강성을 확보할 수 있음 조립식 벽체는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로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기초저판이 없는 구조로 토공사의 감소가 가능하며, 협소한 작업공간에서도 시공이 가능하여 운행 중인 도로 및 철도 현장 등에서도 주변 지장물 및 교통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877(2019.11.25.)
- 개발업체: 에스큐엔지니어링(주), (주)캐어론, (주)부루건설, (주)대한이앤씨

》》 신기술명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과 충전용 그라우트를 활용한 노후 콘크리트 관로 보수·보강 제관공법(CPM공법)

》》 주요 내용

노후 콘크리트 관로에 고정용 앵커 및 보강재(보강철근)를 설치하고 추가 설치장비 없이 인력시공으로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관로를 제관하는 공법이며, 기존 콘크리트 관로와 프로파일 사이에 충전용 그라우트 주입시 발생하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바닥, 벽체, 천정 순으로 프로파일을 설치 및 그라우트를 주입함으로써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보수·보강 제관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879(2019.12.17.)
- 개발업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SK건설(주), (주)해성기공, (주)한화건설, (주)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 신기술명

공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되는 지붕보 공법 (LTS 공법)

》》 주요 내용

공장, 창고, 물류창고, 비행기 격납고, 대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넓은 무주공간이 필요한 건축물(구조물)의 지붕보로 적용되는 기술로, 상하부 플랜지는 동일한 치수의 각형강관으로 하고, 웨브는 얇은 강판을 파형 또는 제형으로 가공한 후 상하부 플랜지를 구성하는 각형강관에 용접 조립하여, 별도의 중간 스티프너로 보강하지 않더라도 전단력에 대한 국부 좌굴강도 및 휨강도와 전단강도를 확보한 공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된 지붕보 기술

- 지정번호(지정일자): 878(2019.11.26.)
- 개발업체: (주)현이앤씨,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주)삼보기술단, (주)건화

》》 신기술명

Pilot터널을 굴착 후 선지보재를 시공하고 확대굴착하는 터널공법

》》 주요 내용

Pilot 터널을 굴착 후 본 터널의 굴착면 방향으로 선지보재(네일 등)를 설치하고 압력그라우팅으로 양호하지 않은 원지반을 보강한 후에 본 터널을 확대굴착하는 공법으로 후지보재(숏크리트, 록볼트 등)와 철근망(RSC, Reinforced Steel Cage) 또는 강지보, 격자지보 등으로 본 터널을 지보하는 기술(KPST공법 :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

출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주)금호지질 대표이사 **허 성 하**



“
심상사성(心想事成)
어떤 일이든
마음먹은 대로 이뤄진다

회사 브로셔를 펼쳐봤다. 대개 첫 면은 회사 대표의 사진과 인사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사장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회사 소개 후 임직원 일동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아하! 대표와 직원이 함께 나아가는 ‘원팀(우리는 하나)’임을 강조하려는 뜻이었다.

(주)금호지질 허성하(66) 대표. ‘금호는 지금, 견고한 기초 위에서 희망의 미래를 준비합니다’란 회사 모토를 보면 그의 본색이 확 드러난다. 차근차근 기술력을 키워서 성공의 길을 뚜벅뚜벅 걸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다. 기초-희망-미래로 이어지는 그의 경영 이정표는 현재 순항 중이다. 또 다른 인사말을 보자. ‘금호는 지금, 견고한 기초 위에서 혁신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창의성 넘치는 앞날을 가꿔나가겠다는 거다.

히 대표는 강서 토박이다. 대대로 김해 산골에서 살다 해방 이후 대저로 옮겨온 집안에서 태어났다. 당시 부산이 아닌 경남 김해군 대저면 도도리 출신이다. 어릴 때는 공군비행학교에 자주 놀러가 프로펠러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조종사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기에 결국 '보라매'의 꿈을 접고 건설인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31년째 오직 한 우물만 파는 그다.

앞서 소개했듯이 히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다. 1991년 금호지질을 설립한 이후 보링과 그라우팅, 토공사업, 비계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업 등 면허를 잇따라 취득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갔다. 땅을 파고 내려가 기초를 다지고, 지반을 보강하며, 흙막이와 차수벽을 설치하는 토목공사가 그의 주력사업. 무엇보다 고도의 기술력이 받쳐줘야 하기에 그가 자랑하며 내세우는 토목기초 부문이다.

“도로가 내려앉는 싱크홀이나 집들이 기울어지는 기사가 많이 나오죠. 그게 차수벽이 터져 토사가 유입되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하 30-50m까지 깊게 파고 내려가 차수벽을 설치하는 작업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호지질은 첨단 기기들을 갖추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지하 연속벽 굴착장비’다. 윈스톱 공사가 가능한 이 첨단 장비를 부산 경남지역에서 보유한 업체는 동아지질과 금호지질 밖에 없다. “지하연속벽 기술은 연약한 실트층에서 암반에 이르기까지 지반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한 차별화된 공법입니다.”

히 대표는 토목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매우 창의적이고 흥미진진하기에. “땅의 모양을 바꾸는, 다시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사업이죠.” 증장비 임대로 ‘노가다’판에 뛰어들었다가 토목으로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이후 부산 지하철 사업에 참여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1, 2호선 서면과 사상역 구간과 다대선 기초공사를 맡았다. 기술력의 비결에 대해 그는 끝없는 연구개발을 강조했다. 우선 많이 배워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모방이 모방으로 끝나서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법. 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명성을 쌓은 금호지질은 지금 북항재개발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진입로를 포함한 다리 건설사업과 200억원 규모의 지하차도 공사를 따내 신명나게 작업중이다. “사업을 수주했다고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멋진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덕분에 금호지질은 내년 중반까지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전문건설업의 애로 사항을 묻자 히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입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합건설사들이 이면계약으로 갑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들의 이익은 철저히 남긴 후 최저가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떠넘기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증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오래된 기업이니 보증을 반납하라고 독촉합니다. 힘겹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용 유지를 하는데 보증 연장은 커녕 되레 빚 갚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고용으로 애국하는 기업에게 푸대접을 한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히 대표는 ‘긍정적으로 살자’는 삶의 철학을 갖고 있다. 참선과 명상을 통해 항상 긍정적인 자신을 다진다. “긍정적 마인드로 무장하면 열정이 샘솟고, 결국에는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성공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다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레 겁먹거나, 자신감을 잃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큰 꿈을 가져야 큰 미래를 열어가갈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는 히 대표의 지론. 그가 강조하는 ‘긍정’은 미국 심리학자 미하이 칩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몰입은 행복에 이르는 기막힌 삶의 기술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고, 자신감이 부족하면 일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기란 어렵다는 거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정신도 몰입에서 나온다.

금강경에 ‘심상사성(心想事成)’이란 말이 나온다. 어떤 일이든 마음먹은 대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그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글 · 최원열



끊임없는 성찰로 부지런히 달려온 건삶인
(주)동남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이 민 규**



필사즉생(必死卽生)
죽을 각오로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첫인상이 다부지고 단단하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망하면 죽는다’는 무서운 각오로 뚝뚝 땀을 흘린 작은 거인, 이민규(62) (주)동남엘리베이터 대표. 죽을 각오로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필사즉생(必死卽生) 철학이 몸에 밴 건삶인이다.

동남엘리베이터(이하 ‘동남’)는 부산 경남의 대표적인 승강기 주차설비 제조사다. 전국적으로는 실적이 총 200여 개사 중 7-8위에 해당한다. 참 대단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기계공고를 나온 그는 특례로 군복무를 마친 후 곧바로 엘리베이터 업계에 발을 내디뎠다. “서울의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중 1987년 부산의 동명산업설비 차장으로 스카웃되었고, 공장장까지 지낸 뒤 독립했습니다.”

30년 넘게 오로지 승강기와 주차설비 부문에 진력하고 있는 그 충북 음성 출신으로 부산에 연고가 아예 없지만 최고의 기술과 신용, 믿음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의 경영원칙은 품질제일주의와 고객만족주의로 요약된다. 먼저 제대로 만들어 제값을 받는다. 품질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절대 고객을 속이지 않는 믿음과 신용이 더해진다. 그러니 고객들이 동남에 만족할 밖에. “어떤 고객들은 아예 견적서도 받지 않아요. 저희를 믿는다는 거죠.”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핵심 부품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지만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 같은 사용자 편의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서비스 정신도 만족감을 한층 더해준다.

그가 냉동창고 화물용 엘리베이터인 수직반송기를 국산화시킨 얘기는 업계의 신화로 불린다. “부산 암남동 일대 냉동창고 수직반송기들은 일본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었더랍니다. 하지만 제가 외환위기 때 신제품을 개발해 수입대체 효과를 거뒀죠.”

철에 페인트를 발라 대당 2억원이 넘게 팔리는 일본제품을 본 이 대표는 자신감을 갖고 덤벼들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철을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페인트 대신 도금을 택했다. 기존 제품의 절반 가격으로 훨씬 성능이 좋은 수직반송기를 본 냉동업체들은 너도나도 동남이 만든 국산제품으로 바꿨다. 금성사나 동양엘리베이터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하던 냉동창고 승강기도 동남산으로 대체됐다. 지게차가 다녀도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해 고객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동남이 국내외 대형업체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건 바로 이처럼 특화된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냉동창고와 물류 창고에 사용 중인 수직반송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동남은 조선소 크레인용 및 LNG 승강기 등 특수 승강기 부문에서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일반 엘리베이터 부문 역시 괄목할 성장을 이뤄 부산 해운대, 연산동, 구서동, 온천동 등 22층 이상 아파트에 고속 승강기를 납품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LH아파트, 국립중앙도서관, 분당선지하철 등에도 납품을 하며 조달 중소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창사 30주년을 맞았던 2018년에는 강서구 녹산공단 본사에 이어 김해 생립2공장을 추가 확보하면서 연매출이 300억원을 넘는 알짜기업으로 도약했다.

현재 엘리베이터와 주차타워 및 퍼즐주차설비를 생산·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로타리주차설비 18대짜리를 개발하여 거래처에서 운행 중에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필생의 역작을 준비중이다.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엘리베이터가

그것이다. 이미 관련 특허 3건을 냈고 현재 시스템 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 승강기 개발이 성공하면 엘리베이터 시장 판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원들의 기를 세워줄 겁니다.” 동남의 코스닥상장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거침없이 돌파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성공의지로 똘똘 뭉친 이 대표를 믿어서인지 동남 직원들은 이직률이 극히 낮다. 정년도 없다. 55년생과 56년생 직원들도 여전히 다닌다. 체력에 문제가 없는 한 평생 근무가 보장되는 회사가 동남이다. 어디 그뿐이라. “직원이 부장이 되면 쏘나타, 임원이 되면 그랜저 승용차를 선물로 줍니다. 직원과 사장은 갑을관계가 아니라 파트너관계, 즉 동반자가 되어야 해요.”

가족 우애도 넘쳐서 이 대표를 비롯한 4형제가 30년 넘게 함께 동남에서 일하고 있고, 아들도 입사했다고. 젊은 나이에 주례도 서봤다며 머쓱해 한 이 대표는 그때마다 강조한 말이 있다며 소개했다.

복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몸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긴다. 잘못된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을 많이 내는 데서 생긴다고 한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명언을 그는 경영의 좌우명으로 삼는다. 그렇다. 그는 지금 부를 가진 기업인이다. 하지만 맨몸으로 시작했던 어려웠던 시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재물을 쌓기 전에 덕을 먼저 쌓고, 덕을 바탕으로 검소하게 살며 부를 좋은 일에 쓰겠다는 다짐이 아닐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마음을 의롭게, 생각을 선하게, 그리고 사회를 이롭게.’

글 · 최원열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 안내

우리협회는 하도급 부당특약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부당특약의 유형과 사례가 담긴 하도급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2019.12.31.)]

01 새로운 부당특약의 유형 및 사례

구분	내용
계약이행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보다 높게 설정 요구하는 약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교부하지 않으면서 계약이행보증서만 제출기한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약정 ■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약정 ■ 하도급자에게 2개 이상의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약정 ■ 계약이행보증 외에 추가보증 또는 현금예치를 요구하는 약정 <p>※ (정당한 사유)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존부, 보증 기관의 재무상태, 보증 영역, 불공정 약관 여부, 하도급자의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p>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지체상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약정 ■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원도급자 위탁종료일로 설정을 요구하는 약정
산업재해예방 비용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위해요소의 제거 및 안전장비 등에 관한 모든 비용을 하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02 시행일: 2020.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또는 공시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전부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 별표3, 부칙 제2조 제4항)
 -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하청의 경우 100억 이상)
 - * 100억 이상: '20. 7. 1, 80억 이상: '21. 7. 1, 60억 이상: '22. 7. 1, 50억 이상: '23. 7. 1
 - ※ (현행)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50억~120억(토목 150억)]
-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제66조)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향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범위(제67조)
 - 기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9개 직종 종사자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기준 신설(제72조, 별표22)
 - (인력) 해당 자격자 교육이수자 등 4명
 - (장비) 렌치류, 드릴머신, 버니어캘리퍼스 등 7종 전자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설계서 교부 의무화 (제4장제10조 제3항)

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2019.12.26.)】

-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에 대한 해제절차(제69조, 제70조)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근로자의 의견 청취 후 해제신청서 제출
 -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해제 여부 결정
-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제94조)
 -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 자격여부 확인 등 안전조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범위(제67조)
 - (대상) 건설장비운전자,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 (교육) 채용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단기간·간헐적* 작업시 2시간)
 - * 연속하여 2개월 이내이거나 연간 60일 이내

03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3호(2019.12.26.)】

- 화재위험작업 승인제 도입(제241조)
 - 화재위험작업 시작 전 사업주 승인 및 해당 장소에 서면 게시 의무

-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대상 확대(제241조의2)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 가연성 물질 있는 장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04 시행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 12. 24. 부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19. 12. 26. 부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9. 12. 26.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2020년 달라지는 건설관련 주요 법령 안내

부산사회는 2020년 달라지는 건설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2019년 기사행된 제도 포함)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주고자 회원사에 안내하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법령 및 제도

01 주요내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제도
-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 관계법령 위반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우대
-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 의무 강화
- 건설사고 발생시 2시간 이내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 신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확대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확대
- 임금체불시 불법하도급 조사 병행 실시
- 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시행
-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52시간) 확대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민간에도 유급휴일 적용 등

02 세부내용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참조

0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우리협회에서 근로시간단축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회원사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인명의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또는 승인 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2020.1.31)】

01 주요내용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제9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
-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의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및 승인을 하는 경우

02 시행일: 공포 즉시(2020. 1. 3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어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23호(2020.2.18.)】

01 주요내용

■ 자본금 특례제도 시행 전 등록업체 소급 적용(제16조 제5항)

- 제도 시행('10.2.11) 이전 둘 이상 건설업종 등록업체의 자본금 특례 소급 적용
→ 해당 건설업체가 관할 구(군)청에 신청시 적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통보대상 완화(제26조 제3항)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수행 중 원도급 1억원 미만, 하도급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공사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10억원 공사를 원도급 받아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고 공사를 수행 중 9천만원의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변경이 있을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 육아휴직 대상업종 확대(등록기준 상 기술능력 3인 이상 업종 → 2인 이상 업종) : 육아휴직 시 1인에 한하여 등록기준 미달 허용
 - 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사무실이 부적합할 경우, 30일 이내 적합한 사무실 이전시 허용
 - * 시행 이후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 자격 반영 등(별표2)**
 -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중 '잠수기능장' 포함
-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 동일한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벌(별표6)**
 - 법 제22조 제7항(각종 보험료 반영), 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제36조 제1항(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제37조(검사와 인도), 제38조 제1항·제2항(불공정행위 금지),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 *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시행 전 2년 이내 행위 불포함

0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2020. 2. 18.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되어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04호(2020.3.2.)]

01 주요내용

-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 개선(제18조 제4항)**
 -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중 1개로 공고하도록 허용
- **관급자재비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 인정(제23조 제10항 제8호)**
 - 수급인이 직접 설치하는 관급자재 공사비에 대해 실적 인정
 - * 시행일 : 2020. 8. 1. 부터(2020. 1. 1. 부터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기일 규정(제28조 제2항)**
 - 하도급계약 후 보증서 발급 소요기간 고려 30일 이내 교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시 합의서 작성의무 및 법정 서식 도입(제29조 제3항 및 별지 제24조의5 서식)**
 - 발주자가 직접지급 합의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의무
-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평가 가산 항목 신설(별표1, 별표2)**
 - 재해발생현황 및 안전강화 조치에 민간공사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 포함
 - * 시행일: 2020. 8. 1. 부터(2020. 1. 1. 부터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0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2020. 3. 2.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2호(2020.3.9.)】

01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사건 요청 범위 확대**
 -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단, 서면미지급/지연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은 제외)
 - 신고인이 서면으로 조정의사를 표명한 경우
 - 원사업자의 매출액(1조5천억원 미만) 및 특정 업종 소지(토목건축공사업) 조항 삭제
- **원사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신설**
 - 관계법령 상 원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 임금구분관리지급 등)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공유가 필요한 경우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위해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지원실적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위탁내용 확인요청서 서식 개정**
 - 항목 간소화 및 부담스러운 문구 완화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사항 반영**
 - 20% → 15.5%

02 시행일: 2020. 3. 9.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신 건설관련 법령
정보 안내**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수주지원 및 건설관련 제도개선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최신 건설관련 법령 정보 제공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법령, 계약법령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예규·고시 등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242호, 2018. 8. 14.)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1호, 2019. 6. 27.)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11호, 2019. 6. 19.)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59호, 2018. 8. 8.)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0호, 2015. 8. 20.)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21호, 2016. 12. 19.)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0호, 2019. 5. 7.)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 2019. 6. 19.)

02 하도급법령 및 관련 주요 고시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23호, 2019. 4. 3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2호, 2020. 3. 9.)
-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6호, 2019. 12. 31.)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1호, 2019. 11. 28.)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8호, 2018. 10. 18.)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8호, 2016. 12. 20.)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8호, 2017. 6. 28.)

03 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78호, 2019. 11. 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9. 6. 2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2019. 10. 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 10. 4.)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각종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하다.

0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09호(2020.3.18.)】

01 주요내용

- 무선설비·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비용 안전관리비에 추가(제60조 제1항)
-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별표5)
 - (종전)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 중급 2명
 - (개정)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총괄」과 「공종별 세부」로 구분(별표7)

02 시행일: 2020. 3. 18.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안내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공포('20. 3. 31.)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법률 제17185호(2020.3.31.)】

- 0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제61조 제1항, 제2항)
 - 1차 사용촉진(3개월 전) → 2차 사용촉진(1개월 전)

0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제60조 제7항)

- 입사일부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사업주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금전보상(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03 시행일: 공포일('20. 3. 3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33호(2020.3.31.)]

01 주요내용

-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연장(제28조)
 -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발주자의 부당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요구 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종합공사 3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이의신청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20일 이내
그 행위를 인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15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발주기관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20일 이내

-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심사 · 조정 완료 전 대리인을 통한 의견진술 가능(제31조 제2항 신설)

02 시행일: 공포(2020. 3. 31.)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020. 10. 1.)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최근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정('20. 4월 시행)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 1월 시행) 등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20년 1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대기관리 권역[서울, 경기, 인천]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였기에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대상지역(시행시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20. 1월)

-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은 당초 '20.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행정지도 및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20. 1월부터 조기 시행 예정
-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1

02 대상공사: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03 사용제한 건설기계(5종)

- 도로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기종)
- 비도로용: 굴착기, 지게차(Tier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기종)
- ※ 벌칙 : 300만원 이하 벌금(저공해 조치하지 않는 건설기계 사용자)

04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

-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 제한 유예 및 연장 허용
- * 건설기계 소유주가 관할 지자체내 저공해조치 신청한 경우
- 6개월간 1차 유예기간 부여(유예확인서 발급)
- 다만, 지자체 예산 부족이나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연장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2020년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안내**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표준품셈 주요내용

- 토공사: 지압판 블록설치 신설, 암반청소 살수차 별도 계상
- 기초공사: 말뚝기초 외부 반출/반입과 작업구간내 이동으로 구분
- 건설기계: 건설기계가격 원화로 통일
- 도로포장공사: 유지보수 현장여건에 따른 품 기준 세분화

- 터널공사: 천공준비시간, 점보드릴 속도 조정
- 타일공사: 규격 확대(0.21~0.4m²), 모자이크(유니트형) 할증 제시
- 창호 및 유리공사: 고소작업차 등 기계경비 별도 계상

02 표준시장단가 주요내용

- 시공단가 조사·반영 현실화* 및 공사비 지수** 반영 조정

* 관공사(주철관 부설), 배수공사(맹암거), 조적공사(벽돌쌓기) 등 113공종

** 1,697공종(생산자물가지수, 평균 노임지수 반영)

※ '19 하반기 대비 2.45% 상승

03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주요내용

- 유사공종별 균 평균증감율 반영 등 현실화* 및 지수** 반영 조정

* 피복석속고르기(해상), 블록대선적재 등 94공종

** 238공종(생산자물가지수, 평균 노임지수 반영)

※ '19 하반기 대비 2.71% 상승

※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 원가정보 →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면 된다.

03

건설부조리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부산사회는 회원사의 고충해결을 위해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불법도급 행위 등 건설부조리 행위와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로부터 겪고 있는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에서는 상시적으로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신고하는 곳: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FAX : 051-633-0261)

02 신고기간: 상시 접수

03 신고방법

- 방문신고: 부산사회 사무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전문건설회관 4층)
- FAX 신고: 부산사회 사무처(FAX : 051-633-0261)

04 신고대상 및 유형

- 건설부조리행위 신고 유형

- 전문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가 도급(하도급 포함) 및 시공하는 행위
- 건설업등록 업종과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행위

- 건설업체가 직영시공으로 위장하여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시공하게 하는 행위
- 건설업체 이사로 등재한 후 소속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행위
- 기타 건설부조리행위 등

■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유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추가공사 지시 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반영하여 주지 않는 행위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 유형을 설정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 행위

05 신고서식: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불법·불공정행위 신고에 게재

04

IMPORTANT

2020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안내

부산사회는 2020년도 사회보험 요율 및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을 회원사에 안내 했다.

2020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01 건강보험료율

년도	보험료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8	보수월액 × 6.24%	3.12	3.12
2019	보수월액 × 6.46%	3.23	3.23
2020	보수월액 × 6.67%	3.335	3.335

- 2020년도 가입자부담 3.335%, 사용자부담 3.335%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0.25%(사용자 10.25%,근로자 10.25%씩 각각 부담)

02 국민연금료율

년도	요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8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2019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2020	표준소득월액의 9%	4.5	4.5

- 2020년도 가입자부담 4.5%, 사용자부담 4.5%씩 각각 부담

03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업별	보험료율	산정기준
실업급여(공동 부담)	16/1,000 (1.6%)	사용자부담 8/1,000(0.8%) 근로자부담 8/1,000(0.8%)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2.5/1,000 (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 (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 (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 (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실업급여요율 전년 대비 23.0% 상승, 고용안정·직업능력 전년과 동일

04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업종류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건설공사(갑)	38	38	39	40.5	37.5 (출퇴근재해 1.5 포함)	37.3 (출퇴근재해 1.3 포함)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

05 노무비율(백분율)

사업종류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건설공사(갑)	27	27	27	27	27	27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

06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설업 월평균임금	3,408,840원	3,588,357원	3,619,987원	3,906,885원	4,226,652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07 최저임금

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일급(8h)	월급(209h)
2017	6,470	51,760	1,352,230
2018	7,530	60,240	1,573,770
2019	8,350	66,800	1,745,150
2020	8,590	68,720	1,795,310

* 최저임금은 2020.1.1 ~ 2020.12.31까지 적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 초과분]

08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2016	75억 7천 5백만원	757천원
2017	75억 7천 5백만원	812천원
2018	75억 7천 5백만원	945천원
2019	86억 8천 1백만원	1,048천원
2020	86억 8천 1백만원	1,048천원

*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기관·공공기관(3.4%), 민간기업(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09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

년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부담금비율	비고
2016	0.6/1,000	0.04/1,000	
2017	0.6/1,000	0.03/1,000	
2018	0.6/1,000	0.03/1,000	
2019	0.6/1,000	0.03/1,000	
2020	0.6/1,000	0.03/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기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안내 및 사전신청 안내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집수리사업,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공원 확충 등 전문건설업의 시공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공사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도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의 주관사로 참여하여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국토부와 LH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지자체에서도 참여할 예정에 있어,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며 관련내용을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행사명:**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 02 기간:** 2020. 6. 3(수) ~ 6(토), 4일간
- 03 장소:**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 04 주최:**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단), 서울특별시(도시재생실), 문화일보
- 05 주관사:** 우리협회, LH, 주택보증,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신·재생에너지 협회, 엔지니어링협회, 클라우드산업협회, 스마트팜협회, 프롭 테크포럼 등
- 06 규모:** 1천개 부스/관람객 10만명
- 07 참가신청:**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을 중앙회 건설정책실 FAX(02-3284-1028) 또는 E-mail(sh6652@kosca.or.kr)로 제출
※ 신청서는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공지사항 참조
- 08 문의사항**
 - **박람회 관련 문의:**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
사무국 T. 02-785-5801 / E-mail : uriexpo@naver.com
 - **신청서 제출 관련:** 중앙회 건설정책실 T. 02-3284-1021~3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년 조달청
공사원가 예비율
적용기준 안내**

부산시회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2020년도 조달청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되는 예비율 적용기준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IMPORTANT

건설업자의 주요 신고·통보제도 이행 철저 안내

부산시회는 2월 3일 건설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9조)

-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위반시 제재사항(동법 제100조 제1호)
 -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50만원

02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계약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권고
- 위반시 제재사항
 - 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150만원(동법 제99조 제2호)
 - ※ 단,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
 -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동법 제99조 제2호)

03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계약 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www.kiscon.net)
-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www.kiscon.net)
- 위반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동법 제99조 제3호)
 - ※ 단,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 통보를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
 - ※ 물품·납품 등을 현장설치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현장설치) 후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고 자 할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0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3항, 시행령 제34조의4, 시행규칙 제28조)

- 수급인(원사업자)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시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함. 또한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면제 기준
 - 1건의 하도급계약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위반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82조 제1항 제8호)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건설업자: 시정명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 시정명령 불이행시: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3호)

0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시행령 제64조의3, 시행규칙 제34조의4)

- 수급인(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현장별이 아닌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지급보증서 교부가 가능한 경우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기준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 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1개의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위반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82조 제1항 제8호)

06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시행령 제64조의4, 시행규칙 제34조의5)

-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반시 제재사항(동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의 서목)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07 하도급 등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도 30일 이내 통보
- 위반시 제재사항(동법 제99조 제5호)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150만원

08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 시행령 제105조 제1항)

-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는 2시간 이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발생시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전화팩스 및 기타 그 밖의 적절한 방법 활용 가능
- 위반시 제재사항(동법 제91조 제3항 제16호)
 - 과태료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08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 안내**

부산시회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되는 “2020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 기계경비 산출표는 표준품셈에 수록된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계수와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등의 경비를 산출한 것이다.

※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 원가정보 → 기계경비산정에서 “2020년 건설기계경비 산출표”를 참고하면 된다.

**불법 외국인력
자진신고 및 합동단속
실시 안내**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 출국 '20. 6. 30일부로 종료,
'20. 7. 1일부로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합동단속 실시**

법무부는 지난 '19. 12. 1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출국 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20. 6. 30일부로 종료하고, '20. 7월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하여 정부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부산시회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유도

- '20. 6. 30. 까지 불법 체류 자진(신고)출국 시,
 - 이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하여 재입국 기회 부여
 - 범칙금 처분 유예
 - 단속 불법 외국인력 차등 조치

02 범정부 차원의 불법외국인 합동단속

- 시행시기: '20. 7월부터
- 참여기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 자진신고 전이라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안내**

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법 준수를 통한 상호 동등한 교섭력 확보와 호혜적 교섭환경을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협회는 회원사들이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조정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예방·대응 매뉴얼
리플릿 안내**

부산사회에서는 건설업 하도급거래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인 부당특약에 대해 회원사가 알기 쉽게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등을 담아 제작된 리플릿을 회원사에 배부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학교 내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안내

교육부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취약 공정이 포함된 공사발주 시 화재감시자 역할을 과업 지시서에 명시하고 의무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19.1월) 천안 00초교 등 3개교 공사장 화재, ('19.3월) 김해 00초교 공사장 화재, ('19.12월) 안동 00초교 공사장 화재 등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위험작업시 준수사항과 더불어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고용노동부령 제273호(2019.12.26)]

01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

- 화재위험작업 시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 사용 금지
-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준수
-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의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

02 화재감시자(제241조의2)

- 사업주는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IMPORTANT

건강보험·국민연금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철저 안내

부산시회는 3월 5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누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시 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건설현장을 건설업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므로 건설현장별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장별로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회는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2018. 7. 31. 이전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인 공사는 2020. 7. 31. 까지 월 20일 기준 적용
- 고용·산재보험의 사업개시신고와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함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8일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건설업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 적용되어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4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 금지

최근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산지역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임대(차선도색차량, 하수도흡입준설차량 등)가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시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임대 금지”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법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01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불법 임대에 따른 제재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특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신청 안내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2010.2.11.)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 2.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0423호)하여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본금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에 따라 부산시회는 「건설업 자본금 기준의 특례 적용 신청 및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신청방법(건설사업자)

-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따라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에 특례를 받고자 하는 업종과 감면자본금 등을 표기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신청
 - 별도의 첨부 서류 및 수수료 없음

02 업무처리(건설업 등록관청)

- 특례 신청업종에 대해 건설행정정보망(CIS) 상 특례업종에 표기
 - 별도의 제출서류는 받을 필요가 없으며, 추후 실태조사 등 등록기준 확인시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확인
 - 다만, 별도의 특례신청 절차를 거쳐 특례업종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적용 불가

※ 건설업 등록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6

타워크레인 사용관련 협조 안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6개월 주기 및 이동설치 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는 안전성 검토, 비파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경과된 장비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3년 단위로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연식이 10년 이내인 타워크레인들만 투입하려는 경향이 있어 20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들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오에 따라 부산시회는 회원사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고 우려 타워크레인 사용자제 및 안전 확인 안내

국토교통부는 최근 타워크레인의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장비에 대한 수시검사 및 운영 중지를 각 사·도 자치 단체에 요청하였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회원사에게 사고 우려 타워크레인 장비 목록을 안내하였다.

사고장비 및 유사형식 장비

형식명	규격(t)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CCTL110	2.9	Shandong Dahan Construction Machinery Co Ltd
CCTL120	2.9	
CCTL130-L43A	2.9	
CCTL150-L48A	2.9	
CCTL150-L68B2	2.9	
CCTT120.8	8.0	
CCTT160-L46A	2.9	
CCTT160-L68B2	2.9	
CCTT321-12	12.0	
CCTT91	2.9	
CCTT91A	2.9	
DC310K12	12.0	
GLC2525	2.5	
MC310-12	12.0	
CCTL140-43A	2.9	
CCTL150A	2.9	
CCTT81	2.9	
YH230.12	12.0	
DSL4017-2.9 L형	2.9	TOP SKY
FT-140L, L형	2.9	SHANDONG HONGDA(중국)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의거 '19. 6. 19. 부터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 및 수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협회 중앙회 점검 결과,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시스템 사용 자체를 하도급대금 직불'로 오인하는 등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하도급 채권 확보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사회는 회원사의 하도급대금 보호와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0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19. 6. 19. 부터 공공공사에서의 대금지급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예외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02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현장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유의사항

-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현장이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없으면,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철도시설공단) 등

- 단, 상생결제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을 사용하면서 원도급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사유>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 하도급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 3자 합의(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 7. 8. 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직불합의”로 변경
-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획득)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 7. 8. 부터 “삭제”
- 상생결제시스템(중기부)을 사용하면서 원도급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 하도급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 3자 합의(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 직불 3자 합의를 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기성청구·수령 시 실제 직불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직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도급자 및 발주자에게 개선을 요구

※ 실제 직불: 하도급대금 일체가 원도급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이체) 되는 것을 의미

- 하도급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불 미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법 상 직불의 무 위반에 해당하고,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기에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기한 내 지급보증 미이행시, 하도급자는 계약이행보증을 아니할 권리를 가짐)

0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교부, 직불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건설사업자 :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건설사업자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및 동법 제82조 제1항 제8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건설사업자 :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 제4호**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않은 발주자: 시정조치, 하도급금액의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않은 발주자: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한국기업데이터 소상공인에 대한 입찰용 평가수수료 면제 안내

한국기업데이터(이하 KED)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용평가등급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평가수수료 전액 면제

- 코로나19로 일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용 평가(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용 등)를 신청하는 경우에 평가수수료(소상공인 개인 25만원, 법인 35만원 ~ 50만원)전액을 면제
 - ※ 소상공인: 소기업중 상시종업원 5인 미만(건설업은 10인 미만)
 - ※ 대구 및 경북지역의 경우 중소기업까지 혜택 범위 확대

02 신청기간: 2020. 3. 11.~4. 30.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 개인기업의 경우 신청 후 결산기 경과로 연말까지 재평가하는 경우도 면제함

03 신청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접속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받아 조달청 제출
- 한국기업데이터(www.kedrating.com)에 회원가입하여 공공용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업 외국인력 취업 및
고용허가제 업무지원
방안 안내**

20

고용노동부는 금년(2020. 1. 1.)부터 특례고용허가(H-2) 외국인력에 대해 신규자는 별도 교육없이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업무 지원 방안도 발표하였기에 부산사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건설업 특례고용(H-2) 외국인력 취업 제도 개선

- 신규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 온라인(<http://eps.hrdkorea.or.kr/h2>)으로 일반교육 사전 접수
 - 일반교육 접수시 「건설업 취업 희망」을 체크하여 신청하면 일반교육 수수료할 때 별도 교육 없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
-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절차: 온라인 사전신청 ⇒ 관할고용센터에서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 알선·자율구직 ⇒ 근로개시 신고
-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절차
 - 온라인(<http://eps.hrdkorea.or.kr/h2>)으로 건설업 취업 인정증 사전신청
 -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고용센터 해당 교육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교육 없이 건설업 취업인정증 유효기간** 연장
 - * 만료예정 취업인정증과 외국인등록증, 여권 ** 신규발급 또는 연장: 1년
-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신청기간 - (연장 신청) 효력 만료일 60일전부터 효력만료일까지 가능

02 고용허가제 업무지원 방안(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방문없는 민원업무 처리 지원
 - 방문신청 필요업무*는 관할센터 유선전화·FAX 등 처리 가능
 - *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고용 등외국인(H-2) 구직등록 등
 - 온라인 신청가능 업무* EPS (www.eps.gp.kr) 홈페이지 처리 가능
 - *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신고, 근로개시 신고 등
-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시기 조정 지원
 - 입국절차 진행 전 관할 고용센터 신청시 송출국가 협의
 - ※ 사전협의 없이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인도 거부 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
 - 코로나19로 입국하지 않아 근로계약 해지된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 구직자(E-9) 우선 알선 또는 다른 국가 근로자 신규 알선

- 재입국특례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20. 2.17.) -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국적 외국인근로자
*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인 자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 발급자
- 사업장 변경신청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20. 2. 29.)
- 구직활동기간(3개월) '20. 2. 28. ~ '20. 4. 30. 기간만큼 일괄 연장 조치
* 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2. 28.~ 4. 30.까지 구직등록 외국인 근로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1

IMPORTANT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계약 추정제도 적극 활용 안내

발주자(수급인)가 도급(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공사 시공 중 추가 구두 작업지시를 수급인(하수급인)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변경)계약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부산사회는 3월 27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작업지시 내용 등을 발주자(수급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 추정제도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추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01 계약 추정제도란?

- 발주자(수급인)가 도급(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하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자(수급인)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의 의사를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02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및 방법

-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의 사항
 - 그 밖에 발주자(수급인)가 도급한 사항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 내용증명 우편
 - 전자문서
 - 그 밖에 통지 및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 서면의 보관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서면 자료를 도급(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6(서면의 보관)

**(주)중앙1군 협력업체
모집공고 안내**

부산사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1군 건설대 기업의 협력업체 모집을 사전 파악하여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케이씨씨건설	(주)한화건설	한신공영(주)
모집 일정	2020. 3. 17. ~ 4. 30.	2020. 4. 1. ~ 4. 30.	2020. 4. 6. ~ 5. 15.
결과 통보	2020. 6월 말 개별통지 예정	2020. 6월 말 예정	2020. 6월 초 개별통보 예정
협력업체 자격 요건	<p>신용평가등급: B0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 ※ 이크레더블 기준 ※ 2018년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불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 B0 이상, 현금흐름 C- 이상 ※ (주)이크레더블, (주)나이스 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 데이터평가자료 ■ 온라인 신용평가서 (주)한화건설로 전송 ■ 상·하반기 신용평가서 및 건설실적보고서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 B0 이상, 현금흐름 C+ 이상 ※ 2019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주)이크레더블, (주)나이스디앤비의 평가를 받은 업체 ■ 영업기간 3년 이상 ■ 공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전체의 40% 이내 ■ 3년간 실적누계금액이 시평액의 1.0배 이상
모집 공종	(주)케이씨씨건설 협력업체시스템 (https://partner.kccworld.net/) '모집공종' 참조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등	건축/토목/기계/전기/원자재 ※ 한신공영(주) 홈페이지 (http://www.hanshinc.com) 2020년 협력사모집 안내문 모집공종 참조
등록 신청 방법	(주)케이씨씨건설 협력업체시스템 (https://partner.kccworld.net/) 회원가입 후 정기업체 등록 신청 ※ 방문접수 불가	(주)한화건설 협력사 포털사이트 (www.edreams21.co.kr)에서 신청	1) 4. 6.~5.15.까지 신용평가기관 평가접수(2019년 재무제표 결산 토대) 2) 신용평가기관 평가완료 후 신용인증서 당사로 On-Line 전송 3) 4. 20.~5. 15.까지 한신공영(주) 전자조달시스템 (http://hseps.hanshinc.com) 접속하여 "평가시스템" 클릭하여 사업자번호 입력 후 진행
문의처	공사관리부 【☎02-513-내선번호】 (토목) 5634, 5648 (건축) 5643, 5645, 5678	(주)한화건설 건설외주팀 【☎ 02-729-내선번호】 (토목) 5772, (건축) 5766, (플랜트) 5775	한신공영(주) 공무부 【☎ 02-3393-내선번호】 (건축) 3197, 3194, 3195, 3202, 3209 (토목) 3205, 3204, 3203, 3192 (기전) 3193, 3196 (원자재) 3207, 3206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관련하여 민원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구분	기존	변경
제출대상	공사금액 50~120억 (토목 150억) 공사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금액 50~120억 (토목 150억)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건설공사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업 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는 건설 공사를 착공하려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임
-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건설공사도급인)가 시공하는
사로 보아야 함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

02 시행일: 지침 시달('20. 3. 10.) 후 즉시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인 또는 개인 건설사업자의 공동대표 관련 법령해석 안내

개인 건설사업자는 공동대표 불가

부산사회는 건설업 등록시 개인 또는 법인의 공동대표자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법인사업자: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 가능

- 대표자가 아닌 “법인”에게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권리·의무 부여
- 건설업 등록 후 대표자 추가시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가능

02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 불가

- “개인”에게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권리·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상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
- 건설업 등록 후 대표자 추가시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건설현장 마비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우리협회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정책을 신속히 회원사에 제공하여 회원사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건설현장 코로나19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접수된 건설현장의 피해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적극 지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회원사가 숙지해야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 신종 코로나 확산 대비 현장·노무관리 안내

0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한 근로자에 대한 현장출입 관리 강화
- 손씻기, 마스크 등 위생수칙 준수

02 주요 노무관리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 매출 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휴업했을 경우 휴업수당 지급
- 연차휴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강제 사용도록 할 수 없음
-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이전 3개월) 산정 시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제외하고 산정

03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하여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 ※ 신청·접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1355)

04 고용유지 지원제도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자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 ※ 신청·접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http://workplus.go.kr>에 관할 센터 연락처 안내)

05 생활안정자금 용자제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용자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 신청·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88-0075)

건설공사 수주 시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 안내

01 원사업자(원수급인)와 정보공유, 긴밀한 협조 및 정당한 요구

■ 증빙자료 확보

- 자재·인력의 수급부족 및 가격인상 등의 영향, 공기연장(또는 돌관공사)필요성 등 현장 애로사항 및 대응방향을 원사업자와 공유
- ※ 가급적 문서화하여 근거를 남길 필요

■ 하도급대금 조정

- 발주자·원수급인 간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하수급인 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노력

■ 공공공사: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비용, 공기연장(계약변경), 지체상금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정부부처에서 대책을 발표

- ※ 발주자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애로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조정요청 필요(필요 시 발주자와 적극 소통)

0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기존 계약

-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 현장은 계약서상 하수급인의 조정 신청권한을 활용하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권리를 적극 주장 가능

■ 향후 계약

- 금번 '코로나19' 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하수급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안내

01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물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

■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제외

- 사유: 부품·재료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곤란하고 지체한 경우
- 방법: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 폐쇄 등 확인

■ 계약금액 조정

- 사유: 부품·재료의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 방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제도 활용
- ※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계약금액이 3%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
- ※ 계약체결일이 90일 이내인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5%(물품구매 10%)이상 증가
- ※ 계약체결일이 90일 이내인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물품구매 6%)이상 증가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심의위원회 판단한 경우

■ 대체-대용품 활용

- 사유: 납품 등이 곤란하나 대체품이 존재하는 경우
- 방법: 기계약된 제품과 성능 등 동등 이상 제품 납품

■ 수의계약 등

- 사유: 예방 등을 위한 신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 방법: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이행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사 제외 및 수의계약 체결

02 적용시기: 즉시시행 (2020.2.14.)

코로나19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안내

01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금번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의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 함

02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사항

- 공사기간의 연장(제17조 제1항제2항)
 - 수급인은 코로나19의 제반사정을 고려한 공사기간 연장 요구 가능
- 계약금액의 조정(제17조 제3항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코로나19로 인한 공기 연장 시
 -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등 수급불균형 발생으로 내역서의 가격 변동 시
- 변경계약서 등의 교부(제20조 제1항제2항)
 -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시 도급인은 반드시 변경계약서 등을 교부
- 지체상금 부과 제외(제17조 제4항, 제30조 제1항)
 - 코로나19로 인한 공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 준공검사 기간 연장(제27조)
 - 코로나19로 인해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비상상황 존속기간과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을 연장가능

03 분쟁의 해결

-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등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등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0)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방법 변경 안내

01 주요내용: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기본, 전문)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만으로 운영

02 교육 변경사항

- 현행: 오프라인교육(35h) + 온라인교육(35h)
- 변경: 온라인교육 (35h)

※오프라인(집체)교육은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잠정 중지

03 온라인교육(35h) 가능 교육기관

교육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건설기술교육원	www.kicte.or.kr	032-463-4901
건설산업교육원	www.con.or.kr	02-575-7123
건설기술호남교육원	www.hicte.or.kr	062-513-0116
영남건설기술교육원	www.cte.or.kr	1544-7660

「건설현장 코로나19 신고센터」 개설 안내

01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공사중단을 포함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코로나19 신고센터」를 개설

02 접수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osca.or.kr>) 접속
- 홈페이지 하단 「코로나19 회원사 피해현황 접수」 클릭
- 일반피해(공사중단 제외) / 공사중단 구분하여 해당 서식 다운로드
- 피해현황 작성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FAX. 02-3284-1028
 - E-mail. sh6652@kosca.or.kr 또는 sungin@kosca.or.kr
 - 접수내용은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본부 건설반 보고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년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 안내**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설치비 지원, 전문건설업체도 신청 가능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건설업 클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체도 신청이 가능하여 부산사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지원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주(종합건설업체-원도급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02 2020년도 지원예산: 554.2억원

03 보조대상설비

- **시스템비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안전방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

04 지원조건

-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
- “안전방망”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 금액)의 3억원 미만 65%, 3억~20억원 미만 60%, 20~50억원 미만 50%까지 지원
- 동일 사업주 지원횟수 제한(연 3회 / 회당 최대 2,000만원)
- **지원제외 대상**
 - 재해예방전문기술지도 미계약 현장(1억원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700위 이내 업체
 -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05 신청방법: 지역별 관할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clean.kosha.or.kr)

06 문의사항

-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박윤종 과장(☎051-520-0515)
-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김유진 대리(☎051-520-0508)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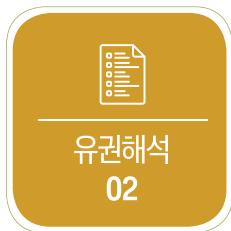


특허 하도급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의 내용 중 제3조에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협의한 비율(%)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협약서의 맨 밑에 참고사항에는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협약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사용료가 없고(0%) 하도급만 계약해도 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다)-(3)”에 따르면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9.9.2.



기성금을 현금수령 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기일이 3~4개월인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법위반 여부?

0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현금결제비율유지 규정에 위반됨.

02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어음의 만기일이 기성금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근거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9. 6. 17.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공사대금][공2020상,244]

? 판시사항

0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을은 병 등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그 후 을이 병 등에게 갑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의 건축주는 갑 회사였고,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 회사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갑 회사와 무 회사는 모두 기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에 을과 병 등이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무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정 회사로부터 무 회사에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갑 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갑 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갑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0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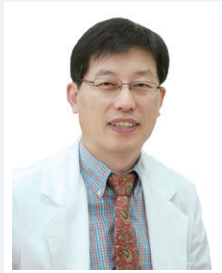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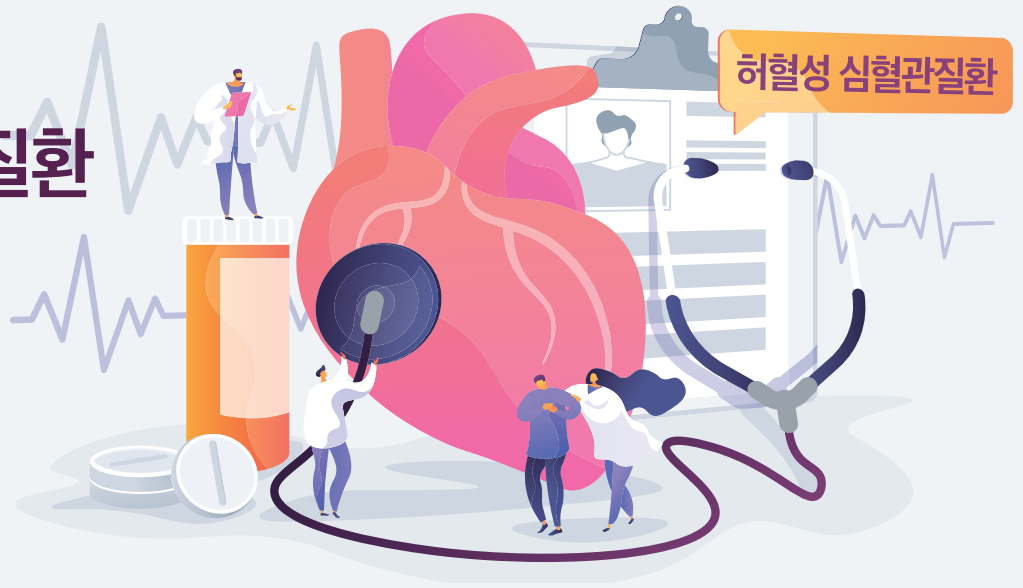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을은 병 등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그 후 을이 병 등에게 갑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의 건축주는 갑 회사였고,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 회사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갑 회사와 무 회사는 모두 기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에 을과 병 등이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무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무 회사는 설립목적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갑 회사의 유일한 자산은 위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는데, 확정판결에 따라 건축주 지위가 정 회사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무 회사에 이전되었으며, 무 회사는 정 회사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 회사로부터 정 회사에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정 회사의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정 회사로부터 무 회사에 다시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갑 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갑 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갑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 회사의 채권자는 갑 회사뿐만 아니라 무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주심) 이동원

돌연사의 주범, 허혈성 심혈관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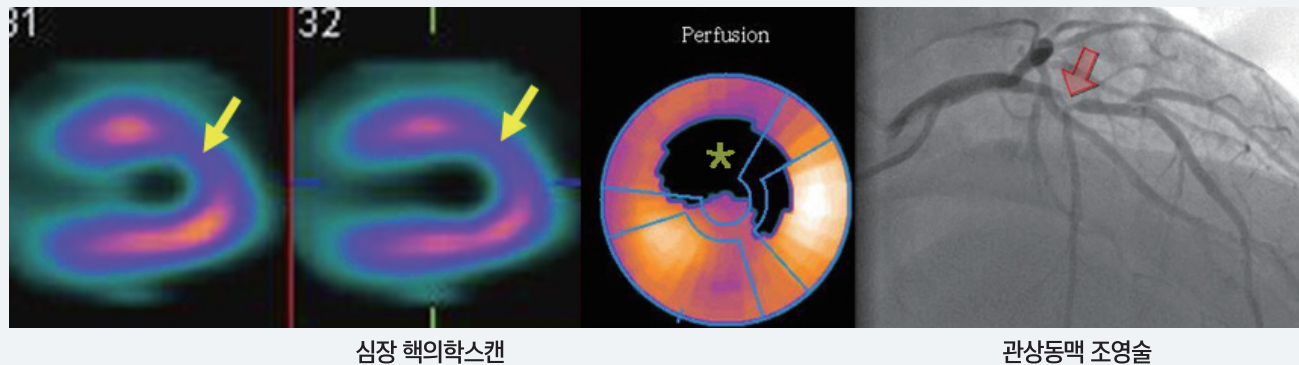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우리나라의 원조 수영 스타였던 조오련씨가 57세의 나이에 심장사한 사건(2009년 8월 4일)은 당시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라톤과 관련해서도 인명사고의 가장 큰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인데, 운동을 하다보면 에너지와 산소 소비가 급증하게 되어 협심증(angina pectoris)이나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 별다른 증세가 없이 사망 자체가 첫 증상인 경우가 많은 허혈성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장마비는 발생해서 뇌사에 이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이어서, 이 5분 안에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심각한 질병입니다. 관상동맥 지름의 50%가 막혀도 증세가 없다가, 갑자기 심장 허혈을 일으키는 점이 바로 심장 질환 돌연사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 협심증은 40~50대 연령층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례 1

J씨(46. 남)는 가끔 가슴이 빠근한 양상으로 흉통이 5-10분간 지속되고 진땀이 나다가, 안정을 취하면 없어지는 과거력이 있었고, 내원 당일엔 흉통이 쥐어짜듯이 심해서 개인 병원에 들러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 뒤 응급실로 오게 됐습니다. 응급으로 반감기가 6시간 정도인 방사성의약품(Tc-99m-MIBI; methoxy-isobutyl isonitrile)을 주사하고 시행하는 심장 핵의학 검사에서 왼쪽 심실의 전벽에 커다란 혈류 결손(그림 1. 왼쪽 화살표와 별표)이 보이고, 치료를 위해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왼쪽 전하행 관상동맥(LAD)에 심한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그림 1. 오른쪽). J씨는 왼쪽 관상동맥에 금속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증세가 호전되었습니다. J씨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의 원인은 고혈압과 30년간 하루 두 갑씩 60갑년의 흡연력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심장 핵의학스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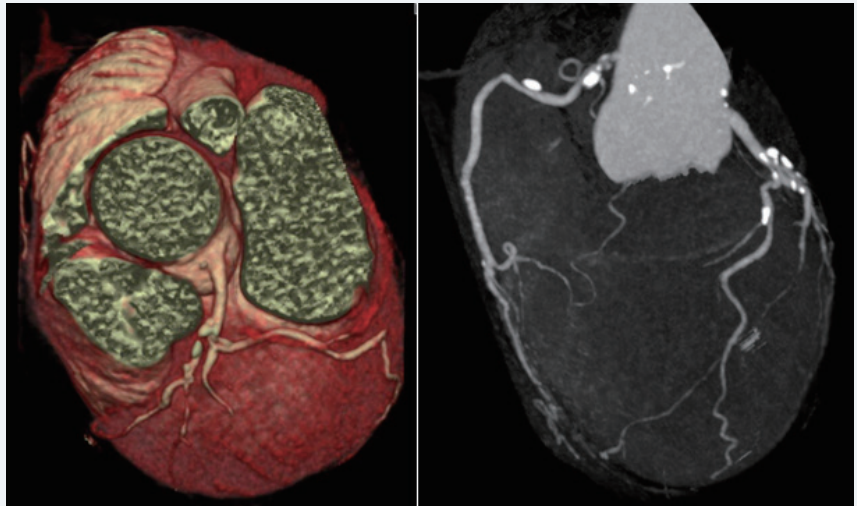
관상동맥 조영술

그림 1. Tc-99m-MIBI를 사용한 심장핵의학스캔과 관상동맥 조영술 영상에서 왼쪽 전하행 관상동맥(LAD)에 심한 협착이 보임.

[의학 영상과 함께 서술하는 건강코너가](#)
[KOSCA Letter 독자들에게](#)
[의학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상검사의](#)
[기본적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례 2

K씨(69. 남)는 5년 전에 당뇨병으로 진단되었고, 수주 전부터 식사를 많이 하거나, 걸을 때 2분 이상 지속하는 흉통이 있어서 심장 내과 외래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의 흡연력과 가족의 당뇨 병력이 있는 K씨의 심장 이상을 의심하여 시행한 다중검출기 전산화 단층촬영(MDCT)에서 관상동맥의 세 분지 모두의 석회화와 다발성 협착이 발견 되었습니다(그림 2). 이후 입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한 혈관 성형술과 금속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K씨에게 발생한 관상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는 당뇨병, 고혈압과 30 갑년의 흡연력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심장 CT의 3차원 재구성 영상

그림 2. 혈관조영제를 주입하여 촬영한 심장 CT의 3차원 재구성 영상에서 석회화된 혈관과 관상동맥의 협착이 보임.

필자가 주위의 환자와 지인에게서 지켜 본 심장병 질환의 주요 증세는 왼쪽 가슴이나 명치끝이 빠근하거나 쥐어짜듯이 아프고, 식은땀과 구토 등의 증세가 많았습니다. 50대 이상에서 갑자기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병원 응급실을 당장 찾아가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심허혈로 인한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이나 심장마비 증세를 갑자기 느꼈을 때 자가 심폐소생술(Self-administer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란 것이 있습니다. 1976년 UCLA의 Dr Criley 등이 JAMA 의학지에 발표한 방법으로, 1초에서 3초 간격으로 성대부위 성문(Glottis)을 닫고 복압을 올려 격심하게 기침을 내뿜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후 얼마동안 외부 심장압박 효과를 보여서 의식 소실을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1분이라도 시간을 더 벌어서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심장사의 예방에는 건강할 때에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유무의 확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금연, 절주,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의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물론 조오련씨가 말초 혈관수축을 강력하게 유발하는 니코틴을 가득 함유한 담배의 애호가였습니다. 굳이 조오련씨가 흡연자였음을 밝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각종 암과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기본 중의 기본인 “금연-절주-적절한 운동”으로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정보

허혈성 심혈관질환(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

- 고지혈증
- 흡연
- 과도한 음주
- 고혈압
- 당뇨병
- 비만
- 스트레스, 운동 부족
- 심장병의 가족력
- 45세 이상 남자, 55세 이상 여자

하도급 분쟁 상담소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감액

A업체는 B업체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B업체는 현지 지반 여건 변화로 조정석공사의 공법을 변경했고 우수공사와 우수공사에서 추가 물량 투입이 필요한 공사를 하자고 구두지시를 해왔다. 여기서 발생하는 변경 금액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반영 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B업체는 A업체에게 준공검사 보완사항으로 소방도로 폭 확장하는 공사와 출입구 진입로의 보도블록을 포장하는 공정도 추가로 지시함에 따라 이 공정 역시 마무리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대금은 처음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1억 2500여만원 정도 증가했다. 이에 A업체는 도면과 수량산출서 내역서를 준공정산 관련 자료로 B업체에 제출하고 지급을 기다렸다. 그러나 B업체는 A업체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B업체가 작성한 정산 내역서만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줄여서 지급한다고 했다.

A업체는 B업체의 요청에 따라, 조정석공사의 변경으로 산벽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대금이 추가됐고, 우수공사에서 빗물받이 집수정 설치 물량 증가, 우수공사에서 맨홀수량 추가 등에 따른 물량 증가, 포장공사에서 인조화강블럭 구간 증가에 따른 물량증가 등이 발생했다.

반면, B업체는 실시공 수량 정산을 원칙으로 정산 내역서를 작성했고 우수공사 및 포장공사에서 물량이 기존 계약 내역보다 적게 투입됐으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감액과 관련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1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의 행위 중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서도 공사대금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위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물량 감소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B업체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B업체는 정확한 물량 감소 수치에 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액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하도급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B업체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A업체에게 미리 줘야 하나, B업체가 제시한 정산내역서는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서면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B업체의 부당감액은 불법하도급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이나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설치돼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나, 조정절차에 불과해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에 따른 시간소요도 만만치 않으므로 어느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좋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상담소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0. 01. 01. ~ 03. 31.

 <p>(주)가도엘앤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91, 102동 1206호 (우동, 해운대두산위브포세이돈) T: 051-929-5879 보유업종: 조경식재공사업</p> <p>임승현</p>	 <p>가민(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곡로 16번길 22, 3층 (부곡동) T: 051-581-5606 보유업종: 도장공사업</p> <p>김중연</p>	 <p>(주)가온건설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606호 (우동, 선프라자) T: 051-746-0404 보유업종: 포장공사업</p> <p>주영삼</p>
 <p>건우스톤(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3, 1307호 (초량동, 오피스텔프리저던트) T: 051-468-3447 보유업종: 석공사업</p> <p>지현오</p>	 <p>(주)경연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40, 1507호 (화명동, 덕진상뜨레뷰앙코르) T: 051-365-3693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p> <p>김원경</p>	 <p>(주)관문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45번길 37-1 (남산동) T: 051-523-3506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p> <p>김향월</p>
 <p>(주)그루조경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50, 5층 (문현동) T: 051-647-8132 보유업종: 조경식재공사업</p> <p>송지은</p>	 <p>(주)금야테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75번길 9 (감천동) T: 051-751-8661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p> <p>김청운</p>	 <p>(주)다온인테리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3로 97, 105동 1714호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T: 053-721-6767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강흥기</p>
 <p>(주)다해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7로 78-39, 1층 T: 055-362-9525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p> <p>정부철</p>	 <p>(주)달해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112-24 (대저1동) T: 051-831-3909 보유업종: 지붕판공·건축물조립공사업</p> <p>윤현식</p>	 <p>(주)대경씨엔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629호 (우동, 선프라자) T: 051-911-7788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최희승</p>
 <p>(주)대연아이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87번길 13 (거제동) T: 051-868-9687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이찬석</p>	 <p>대진환경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길 26-5 T: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p> <p>정도성</p>	 <p>(주)동남엘앤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방정로180번길 12, 101호 (개금동, 삼영빌라) T: 051-803-6068 보유업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p> <p>채경연</p>
 <p>동넉디자인(주)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74, 2층 (문현동) T: 051-638-757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이용철</p>	 <p>(주)동양종합기술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813호 (재송동, 센텀S타워) T: 051-466-8334 보유업종: 조경식재공사업</p> <p>구호성</p>	 <p>(주)동양종합기술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813호 (재송동, 센텀S타워) T: 051-466-8334 보유업종: 조경식재공사업</p> <p>김일봉</p>
 <p>(주)동영건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50번길 4, 3층 (중동) T: 051-731-0759 보유업종: 습식·방수공사업</p> <p>김영만</p>	 <p>(주)동음에스앤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628, 1동 5층 T: 051-723-1156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이상수</p>	 <p>(주)두경건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 40, 5층 (하단동, 세진빌딩) T: 051-208-4329 보유업종: 토공사업</p> <p>이두숙</p>

회원사 현황

 김종환	(주)두원이엔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702호 (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T: 051-521-4551 보유업종: 습식·방수공사업	 현임진	(주)디에이세움건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 22-16 (남항동2가) T: 051-412-5500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이경자	(주)디자인에이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114번길 18-5 (연산동) T: 051-624-4486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차미혜	(주)디자인플랜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70번길 48 (광안동) T: 051-753-2579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정원석	디자인하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355A호 (우동, 백스코) T: 051-740-762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김재식	(주)디파하우징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남로 9번길 28, 203호 (거제동) T: 051-914-3443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신우석	(주)라온에스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38, 상가동 202호 (남산동, 삼성아파트) T: 051-515-553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안영순	(주)로젠산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정관산업로 1123 T: 051-907-7736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박소윤	(주)모두산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23번길 28, 2층 (양정동) T: 070-5153-1866 보유업종: 습식·방수공사업
 손정호	(주)미래씨엔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로32번길 18, 6층 602호 (거제동, 나라타운) T: 051-710-0827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권기정	발해건설(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265, 355동 502-4호 (하단동, 가락타운2,3단지) T: 051-291-0060 보유업종: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이방우	(주)방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연로 11, 218동 203호 (연지동, 연지자이아파트2차) T: 051-921-1994 보유업종: 포장공사업
 이희섭	(주)백호이엔씨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3, 제삼기메이딩 제3층 제301호, 제302호 T: 051-724-7874 보유업종: 습식·방수공사업	 김수정	(주)보원인더스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188번길 25, 201호 (대저1동) T: 051-941-9917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한을순	(주)복경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하정로30번길 29-4 (선동) T: 051-518-3901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남원식	(주)복경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하정로30번길 29-4 (선동) T: 051-518-3901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최병길	(주)부산로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71번 가길 40-22 (대저1동) T: 051-941-3701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이소정	빌드인(주)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772번길 23-1 (구포동) T: 051-246-0556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정경란	(주)삼명건설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135번길 7, 3층 (사직동) T: 051-506-3700 보유업종: 토공사업	 정혜수	삼주건설(주)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 5-2 (서대신동1가) T: 051-231-0405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김수현	(주)서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5층 (남산동) T: 051-513-1223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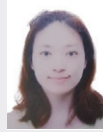
성우이엔지(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 52, 2층 (남산동)
T: 051-532-9920
 보유업종: 도장공사업

김도우



(주)성일레저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41, 6층 (남포동4가)
T: 051-231-6023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조재영



(주)세진씨엔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55번길 56 (반여동)
T: 051-913-0490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염수안



(주)신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하신번영로 444 (염궁동)
T: 051-322-6008
 보유업종: 도장공사업

김정무



(주)신우리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1길 6-27, 501호
T: 051-728-090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조덕주



씨.티(C.T)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32 (송정동)
T: 051-971-9091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진석우



(주)씨에이치건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32, 302호 (구서동, 대양빌딩)
T: 051-515-7012
 보유업종: 승강기설치공사업

진병철



(주)씨와이건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601호 (거제동, 일화오피스텔)
T: 051-507-5261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임혜수



(주)아시아퍼시픽 마린컨트랙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1104호 (재송동, 큐비이센텀)
T: 051-790-1803
 보유업종: 수중공사업

서봉재




(주)아이원디자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하신번영로 411 (하단동)
T: 051-291-7475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홍영숙



아트콘(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9 (주례동)
T: 051-313-6053
 보유업종: 포장공사업

정주영




에스알디자인컴퍼니(주)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내기로 38-1 상가2동 202호 (청하동, 원우엔리치빌아파트)
T: 051-418-0502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석공사업

홍지영



에스투비건설(주)
 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751-1, 2층 (청룡동, 베네스트빌딩)
T: 051-508-3008
 보유업종: 토공사업

김혜진



(주)에이치디자인그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비동 207호 (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T: 051-784-2365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정희정



예림건설(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118, 3층 (양정동)
T: 051-868-6285
 보유업종: 토공사업

김도우



위드산업(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68-1 (학장동)
T: 051-961-2323
 보유업종: 금속구조물 철호-온실공사업

김남연



(주)위드현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259, 2층 (대저1동)
T: 051-529-4282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이중덕



(주)유성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34번길 2 (초량동)
T: 051-853-3134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김재영



(주)유성석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65, 4층 (남천동, 대경빌딩)
T: 051-612-2647
 보유업종: 석공사업

이상욱



(주)유안건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297, 2층 (대저1동)
T: 051-941-5958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신남술




(주)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로 39, 상가 301동 106-1호 (가화만사성 정관타운)
T: 051-728-687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김태영

회원사 현황

 허영욱	(주)이진건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염곡북로 32, 1층 에이동 101호 (염곡동) T: 051-323-0482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최현숙	(주)일성석면환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13, 2층 (청학동) T: 051-413-6609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심수덕	(주)젠플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224-9, 1층 102호 (대저1동) T: 051-502-1889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김미경	(주)정림임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미로 13번길 20, 3층 (연산동) T: 051-464-5100 보유업종: 조경식재공사업	 박병석	정우플로우(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음산단1로 15번길 41 (구랑동) T: 051-404-0024 보유업종: 습식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장청수	(주)제이엔케이디자인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120, 상가-301호 (대연동, 장백장미타워) T: 051-621-2468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허진욱	(주)제이유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39, 1층 (구포동) T: 051-334-200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이준경	(주)제이케이씨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기장대로 82-8, 301동 B108호 (동부산관광 단지 삼정그린코아아파트더베스트) T: 051-723-0494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제응근	(주)젠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달2로 662 (생곡동) T: 051-442-1235 보유업종: 수중공사업
 반재철	(주)중앙안전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11, 3층 (문현동) T: 051-926-8960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이남숙	지산석재(주)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41번길 13, 204동 202호 (대연동, 대연2차동원로알듀크) T: 051-636-0067 보유업종: 석공사업	 양윤정	(주)지엠건축디자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208번길 3, 1층 (연산동) T: 051-925-6095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곽성수	진광건설(주)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13, 2층 (구포동) T: 051-338-3490 보유업종: 습식·방수공사업	 손성민	진성디엔씨(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6번길 122, 2층 (대연동) T: 051-711-1335 보유업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정진석	진우공업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433, 1층 102호 (괴정동, 대신상가아파트) T: 051-201-3637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김민규	(주)진하건설 부산광역시 연제구 배산북로 11번길 19, 204호 (연산동) T: 051-529-4282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윤치관	(주)천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3, 608호 (중동, 웰비치오피스텔) T: 051-731-3009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이은아	(주)천우엔지니어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43, 412호 (부전동, 서면베르빌) T: 051-333-3669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홍금복	(주)청호디엔씨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 28번길 20 (문현동) T: 051-634-0496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황정임	(주)칸디자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2번길 7, 101동 203호 (거제동, 삼익퓨처타 워아파트) T: 051-502-1599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정소현	(주)케이오씨(K.O.C.Co.,Lt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 2008호 (우동, 마린파크상가) T: 051-731-1090 보유업종: 수중공사업



김근표
큐디자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음산길 17, 2동 1층
T: 051-717-3607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임종준
(주)태창테크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전철로 208-1 (대저1동)
T: 051-809-3538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손대성
(주)팜디자인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38번길 9, 지하101호 (구포동)
T: 051-782-899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김승철
(주)포이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46번길 30, 208호 (연산동, 옛동산오피스텔)
T: 051-715-488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김진형
(주)프로해즈넷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3 (거제동)
T: 051-831-2939
 보유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문이순
(주)한성엔지니어링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77로 19 (송정동)
T: 051-973-7020
 보유업종: 수중공사업



김연철
(주)한일디앤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보로 97-1, 5층 (연산동)
T: 051-751-6867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고윤희
해그린건설(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118, 4층 (양정동)
T: 051-851-3120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승희
현운건설(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6길 28, 3층
T: 051-723-3313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부산 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0. 01. 01. ~ 03. 31.

지역	업체
전출 업체 현황	(주)누리세움(대표: 최태용, 경남)
	삼덕산업개발(주)(대표: 안상필, 경기)
	(주)성창개발(대표: 김명학, 강원)
	(주)세양산업(대표: 권성미, 울산)
	에스에스건설(주)(대표: 선성균, 전북)
	(주)에이치비산업(대표: 김충연, 경남)
	(주)엘케이토건(대표: 이성우, 울산)
	(주)재왕에스와이(대표: 동정훈, 경남)
	치원건설(주)(대표: 김장원, 경기)
	(주)현대하이텍(대표: 박미정, 경기)
전입 업체 현황	가나환경(주)(대표: 김남일, 경남)
	(주)가원(대표: 피재희, 경남)
	(주)부산로드(대표: 최병길, 충남)
	(주)상운이앤씨(대표: 신영성, 경기)
	(주)에이비씨건설(대표: 강태형, 충남)
	영진건설(주)(대표: 조덕래, 경남)
	조광건설(주)(대표: 김동윤, 경남)
	풍산건설(주)(대표: 이성준, 경기)
	한누리건설(주)(대표: 김보미, 경남)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20. 3. 31.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 구	29	63
동 구	56	107
서 구	26	30
사 하 구	74	103
영 도 구	22	33
동 래 구	177	228
남 구	99	140
금 정 구	240	354
연 제 구	151	237
해운대구	233	323
수 영 구	109	169
부산진구	180	246
북 구	90	118
사 상 구	127	163
강 서 구	215	295
기 장 군	211	315
합 계	2,039	2,924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출처 안전보건공단

흙막이가시설 상단의 낙석에 맞음

공사명	경산 ○○○ 신축공사	발생년월	2017년 2월 10일 13:50경
재해형태	맞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경산시 백천동 166	공사규모	지하 2층, 지상 23층, 12개동
재해개요	2017년 2월 경산시 소재 경산 ○○○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가시설 되메우기 구간 하부에 있던 ○○건설(주) 소속 재해자(보통인부)가 흙막이가시설 상단에서 약 12m 아래로 떨어진 토석이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		

재해 상황도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작업 시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저 (유도자 배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
-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구간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실시
 - 되메우기를 위한 성토재 적치 시 흙막이가시설 상단 단부에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토질에 따른 적정 기울기를 확보 및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작업 시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사용 시 작업시작 전 해당기계의 전략,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이나 지반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함

해빙기 취약시기 건설현장의 위험요인별 주요 재해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펌프카로 Con'c 타설 중 지반침하로 차체가 기울며 펌프카 붐대에 깔림

공사명	**B-1 B/L 아파트 건설공사	발생년월	2016년 3월 22일 03:30경
재해형태	맞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강릉시 흥제동 ****번지	공사규모	APT 5개동 363세대
재해개요	2016년 3월 22일 08:30경 ○○건설(주)가 시공하는 강릉시 소재 아파트 A-2 주차장 Slab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에서 ○○종건(주) 소속인 재해자(비계공, 46세)가 펌프카 붐 끝단부에 붙어 있는 End Hose를 잡고 Con'c 타설 중 펌프카의 왼쪽 아웃트리거 고임목이 침하되며 아웃트리거가 이탈하고 펌프카 붐대가 아래로 쳐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		

재해 상황도

Deck Slab에서 End Hose를 잡고 작업 중
 ↓
 펌프카 전면 아웃트리거의 설치지반이 침하되어
 ↓
 펌프카 플레이싱 붐이 떨어져 재해자를 강타함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등의 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는 그 기계가 넘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조치(치환 등의 지반 보강조치 후 평판재해시험 등을 통해 지반 소요지지력 확인 등)를 하여 재해를 예방함
- 사전조사 및 적절한 작업계획 수립·이행 철저
 - 펌프카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과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지반 침하 등에 대한 보강계획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Mo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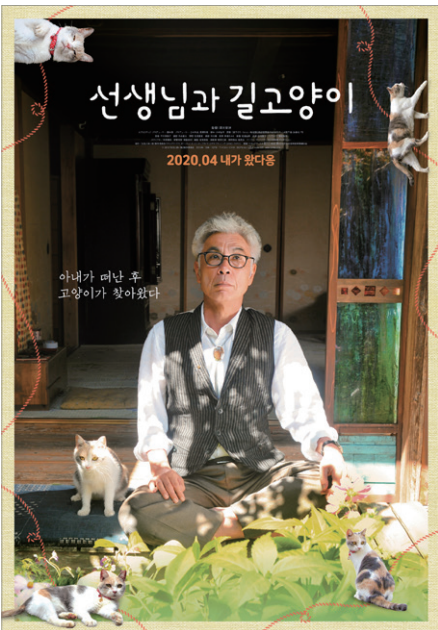
행복의 단추를 채우는 완벽한 방법

개봉 2020.04.08. | 감독 칼 헌터

출연 빌 나이(앨런), 샘 라일리(피터)

아버지와 나,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마이웨이 아버지와 소심예민왕 아들의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소원했던 부자가 실종된 형을 찾아 나서며 점차 가까워지는 과정을 감각적인 미장센과 따뜻한 연출로 담았다. 거기에 대사 하나하나에 담긴 유틸 넘치는 유머, 테일러인 주인공의 세련된 정장 스타일링 등 영국 특유의 유머, 패션, 음악이 총집합해 영화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TV 시리즈, 소설, 음악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력파 제작진이 총출동해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웃음과 감동을 모두 안겨줄 가족드라마로 삶에 지친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몽클한 감동과 진한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선생님과 길고양이

개봉 2020.04.08. | 감독 후카가와 요시히로

출연 이세이 오가타(교장선생님), 소메타니 쇼타

소중한 고양이를 찾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슬픔에 빠진 교장 선생님은 홀로 단조로운 생활을 이어간다. 그 앞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길고양이가 나타난다. 교장 선생님은 길고양이를 볼 때마다 고양이를 애지중지했던 아내가 떠올라 마음이 아프다. 어느 날 길고양이를 매몰차게 쫓아내버린 후, 고양이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는 마을 사람들과 고양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고양이를 찾으며 마을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하고, 아내와의 아름다운 이별도 준비하게 되는데... 따뜻한 감성으로 주목받는 후카가와 요시히로 감독과 일본의 명배우 이세이 오가타, 그리고 고양이의 조합으로 훈훈한 힐링을 선사한다. 상처 난 마음을 보듬는 치유를 다루어 따뜻한 봄에 더 없이 잘 어울리는 영화가 될 것이다.

Best Seller BOOK

하루하루를 첫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글 김정원



정혜신 | 해냄 | 15,800원

당신이 옳다

타인의 시선에 부응하려 발버둥치고, 관계의 고단함으로 내 마음은 뒷전이 될 때... 날로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서 '나를 구하고 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세밀히 담았다.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가 현장에서 쌓아 올린 경험과 내공, 정성이 집대성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도우 | 시공사 | 13,800원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드라마 방영 기념 한정판]

2018년 출간된 이도우 작가의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가 JTBC 동명 드라마 방영을 기념하여 새 옷을 입고 독자를 찾는다. 그림 작가 제트의 일러스트가 시선을 사로잡는 윈터 에디션은 두 주인공이 마음을 확인하는 '의심이 이루어지는 곳'을 표지에 담았다.



정주영 | 한국경제신문 | 16,000원

하버드 상위 1퍼센트의 비밀 [리커버에디션]

하버드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투자자 집단 '블랙 다이아몬드' 책 속에는 세상의 많은 블랙 다이아몬드들의 새로운 성공 이야기가 가득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사회의 부정적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와 자기 분야에 깊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승환 | 다산초당 | 16,000원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왠지 마음이 쓸쓸하고 허무하다.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분명 하루 하루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 만약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의 속도에 치진 것이다. 책에 담긴 문장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보내보자.

※ 베스트셀러 순위는 반디앤루니스의 2020년 3월 넷째 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 도서는 추천도서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3위> 어린이도서『혼란남매 4』 <5위> 어린이도서『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3』 <6위> 페이퍼토이북『팬수 핑아트 #페이퍼토이북』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elpful tips



2020년 달라지는 제도들

참고 기획재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분야별 정책

복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로 통합됩니다.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한도도 '300~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훈련비 자비부담률*도 개편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 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실업자: 30% 수준 ▲재직자: 0~40%

개정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비부담률 경감

건축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 절차가 변경*됩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시, 계획서를 작성 하여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공사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매 2년 / 소유자 등이 점검자 지정

개정 준공 후 5년 내 최초, 매 3년 /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가족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됩니다.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범위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넓어졌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칼에 베이는 듯 극심한 고통

공포의 질환, 대상포진

세종대왕도 앓았다는 대상포진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악명이 높다.
봄철 환절기 등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는 시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정원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면역력 키우는 법

01 균등한 영양섭취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자. 과일과 채소, 제철음식 등을 통해 비타민C와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02 꾸준한 운동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격렬한 운동보다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등 저강도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03 양질의 숙면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피하자. 성인 기준 7~8시간, 고령자는 5~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의 최대 요인이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자.

분만통만큼 심한 고통,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띠 대(帶)’, ‘모양 상(狀)’이라는 뜻으로 띠 모양의 물집을 말한다. 초기에는 발열과 두통, 감기몸살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3~7일 후부터 피부에 발진이 나 수포가 올라온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체내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질병이다. 보통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병하지만 최근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상포진은 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고령일수록, 발진이 많을수록 통증이 심하다. 심한 경우 고통의 크기가 분만통보다 더 심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

골든타임은 발진 후 72시간 내

발진이 일어난 후 72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골든타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바이러스 재발을 억제하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거나 고령의 환자는 대상포진이 완치하더라도 만성 신경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수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 개선 등 평소에도 면역력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더불어 50대 이상의 성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연에 흠뻑 빠지다

기장 임랑해수욕장

푸른 숲과 윤슬이 반짝이는 파도가 어우러지는 임랑 해수욕장은 부산과 울산의 경계, 기장 임랑마을에 위치한다.

자갈이 내는 맑은 소리와 먼 곳의 등대가 자연 정취를 더하는 이곳에서 여유와 휴식의 시간을 보내보자.

글 김정원 사진제공 누리부산

갈맷길 1코스(33.6km, 10시간)



유유자적,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곳

임랑(林浪)이라는 이름은 울창한 수풀(林)과 반짝이는 바다 물결(浪)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옛 임랑 사람들은 낮에는 남쪽에서 흐르는 임랑천에서 고기를 잡으며 놀고, 밤에는 조각배를 타고 떠오른 달을 구경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임랑 해수욕장 역시 자연에서 노닐었던 그 옛날의 정취가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도심 속 해수욕장에는 해변을 따라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높은 건물 대신 유유자적 갈매기가 바다 위를 날고 해변 인접한 곳에서는 미역이 바닷바람에 말라가고 있다.

월출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임랑 해수욕장은 일출과 일몰에도 평화로운 풍경이 연출되어 절로 사진기를 꺼내게 만든다. 해안선을 따라 저 멀리 시선을 던지면 시야에 방해되는 건물 하나 없이 속 시원

하게 펼쳐진 해안선이 색다른 바다의 모습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근처 임랑항의 물고기 등대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출사지로 이미 유명하다.

백사장은 길이 1.5km로 넓게 펼쳐지고 수심도 1.3m로 비교적 높지 않아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사람이 붐비는 편도 아니니 바다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다. 또 임랑 해수욕장은 부산 갈맷길 제1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임랑 해수욕장에서 일광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따라 걸으며 곳곳에 숨어있는 맛집을 둘러보자. 식도락이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근처에 둘러볼만한 곳

임랑해맞이마을

해수욕장에서 도보 내외 5분 내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화 마을*에 선정된 임랑해맞이마을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임랑 해수욕장에서 즐길 수 있는 서핑을 추천한다. 임랑서핑학교는 서핑 장비 대여와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방문객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기장 장안사

해수욕장에서 자동차 약 15분 내외

불광산(佛光山) 자락에 위치한 장안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원래 이름은 쌍계사였다. 사찰에서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풍경과 새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즈넉함을 즐길 수 있으며, 2012년에 보물 제 1771호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한 다수의 유형 문화재가 있다.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노이슈반슈타인 성

아름다운 모습 속에 담긴 화려한 비극,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소개한다.

글 김정원

동화나 예술작품 속에 등장할 만한 자태를 뽑내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바이에른의 왕 루트비히 2세가 지은 성채 궁전이다. 이름은 새로운(Neu) 백조(schwan) 석성(stein)이라는 뜻으로 디즈니랜드 <잠자는 숲 속의 공주>와 <신데렐라>에 등장하는 성의 모델이기도 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알프스 산맥이 남쪽에서 뻗어 올라오고, 북쪽으로 널따란 평원이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인상적인 성의 모습만큼이나 축조를 둘러싼 이야기 역시 한 편의 영화 같다.

루트비히 2세의 부왕이었던 막시밀리안 2세는 '슈반슈타인 성'을 재건축해 '호엔슈방가우 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여름용 궁정으로 사용했다. 루트비히 2세는 이곳에서 리하르트 바그너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는 바그너 작품세계의 주축이 되는 게르만 신화와 건축에 관심을 두게 된다.

루트비히 2세는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뒤, 왕궁 곳곳에 바그너의 오페라 속 장면들을 벽화로 그리고 궁전을 개조하는 등 자신의 미적욕구를 충족시킬 건축 사업을 실행해 나갔다. 하지만 재위한지 2년 만에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바이에른은 독일에 흡수되어 주권을 상실했고, 왕의 권위 역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현실세계로부터 도피하듯 그의 탐미적 성향은 심해졌고 건축에 점점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 왕의 사치를 부추킨다는 명목으로 바그너가 왕실에서 축출될 정도였다.

이후 루트비히 2세는 교권 강화를 둘러싸고 관료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정치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이윽고 노이슈반슈타인 성 축조를 계획한다. 그는 자기 환상 속의 성을 짓는 데 재정과 여생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바이에른 왕국은 왕의 사치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1886년 루트비히 2세는 정신병자로 관정 받아 퇴위를 당하고, 퇴위 후 3일 만에 슈타른베르거 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공식 발표된 사인은 자살이었지만 많은 의문점을 남긴 죽음이었다. 성은 그가 죽은 뒤, 1892년에 완성되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의 외관은 그야말로 웅장하고, 내부엔 예술작품들이 가득하다. 로마네스크, 비잔틴, 고딕 양식이 한데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구조와 함께 바그너의 작품세계가 펼쳐져 있다. 침실 벽면에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벽화가, 거실에는 <로엔그린>과 <파르지팔>의 벽화가, 서재에는 <탄호이저>의 장면을 담은 그림들이 있다.

루트비히 2세는 이 성을 자신이 죽을 때 무너뜨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그의 사망 6주 뒤부터 성은 개방되었고 매일 6천여 명이 관람하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Schloss Neuschwanstein



색을 즐기는 기쁨

어른들의 색칠놀이, 컬러링



미술에 소질이 없어도 좋다.

취향껏 마음에 드는 색을 고르고 칠하면 작품 하나가 완성된다.

평소와 다른 종류의 집중과 몰두를 유도해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주는 취미, 컬러링을 만나보자.

색연필 다시 드는 어른들

밀그림이 그려진 도안에 원하는 색을 골라 칠하는 컬러링은 어릴 적 색칠놀이와 닮았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컬러링을 통한 미술치료가 우울증 완화와 노인 치매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단순한 색칠놀이 그 이상이다.

초기 컬러링은 색연필이 주 재료였지만 요즘엔 물감과 파스텔 등으로 다양해졌다. 도안 역시 자연의 나무와 꽃에서부터 인물, 도시 랜드마크, 세계 명화와 우리나라 민화, 마음에 안정을 주는 만다라 패턴까지 다양한 컬러링북의 출시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색을 조화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면, 색을 미리 지정해 번호에 맞는 색상으로 칠하면 되는 피포페인팅도 있다.

진화하는 컬러링

기본 컬러링에서 변화를 주고 싶다면 다 쓰지 못한 오래된 립스틱이나 색도, 매니큐어 등 집에서 쓰지 않는 화장품을 이용해보자. 색다른 질감의 컬러링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채색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컬러링 방식의 제품들도 있다. 조각 난 스티커를 해당하는 숫자에 맞게 붙여서 도안을 완성하는 스티커 컬러링과 밀그림을 따라 스크래치 펜으로 긁어주면 숨겨진 색이 드러나는 스크래치 컬러링도 인기가 좋다. 컬러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즐길 수 있는 컬러링앱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원하는 도안을 선택해 연필과 크레용, 붓, 스프레이 등 마련된 툴로 마음껏 칠해보거나 클릭으로 간단하게 색을 채울 수도 있다.

추천 컬러링

- 색깔 선택이 어렵다면 > 색이 정해져 있는 '피포페인팅'
- 칠하는 것이 어렵다면 > 칠할 필요 없이 붙이는 '스티커 컬러링'
- 특별한 컬러링을 원한다면 > 긁어서 표현하는 '스크래치 컬러링'
-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 선물용 '엽서 컬러링북'
- 재료 사기가 부담스럽다면 > 컬러링 어플

틈날때 간단하게 배우는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외국어 회화를 소개한다.
이번호에서는 체코 사람과 만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법을 알아보자.

체코어 기초 인사말

상황	인사
안녕하세요.	아침 Dobré ráno 도브레 라노 점심 Dobrý den 도브리 덴 저녁 Dobrý večer 도브리 베체르
반갑습니다	Těší mě 제쉬 메
감사합니다	Děkuji 제꾸이
미안합니다	Promiňte 뽀로민떼
안녕히계세요	Sbohem 즈보엠

체코 사람과 만났을 때, 참고하세요!

TIP. 01

체코에서는 학교에서 15분 지각하는 것이 용인될 정도로 약속시간에 관대한 편이다. 15분 정도 늦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늦을 경우 사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TIP. 03

체코에서도 높임말이 존재하며 공식과 비공식의 구분이 철저하다.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TIP. 02

약수할 때는 길지 않게, 그리고 상대방의 눈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체코 사람은 약수할 때 손을 다소 세게 잡는 경향이 있다. 약수를 살짝 하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TIP. 04

우리나라에서는 콧물이 날 경우 화장실에 들어가 코를 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휴지로 간단하게 코를 닦아낸다. 하지만 체코에서는 코를 훌쩍대는 것이 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코를 시원하게 푸는 것이 오히려 예의다.



☺ STORY 01 당찬 아들

6살짜리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아버지: 이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들: (당당하게) 대통령요!

대통령이란 말에 흥이 난 아버지.

아버지: 그럼 우리 아들 대통령 되면
아빠 뭐 시켜 줄 거야?

아들: (더욱 당찬 목소리로) 자장면요!



☺ STORY 02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두 남자가 간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탄산음료 두 잔을 주문한 그들은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
내 먹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이 그걸 보고 남자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기서는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자 두 남자는 먹는 걸 멈추고 서로 바라보더니
각자가 먹던 샌드위치를 바꿔서 먹었다.





허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간단 스트레칭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거나 장시간 쪼그려 앉아 일하는 경우, 허리가 쉽게 아파온다.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은 허리의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허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몸의 중심을 다시 잡아보자. 무리한 운동은 부상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허리를 풀어주는 중둔근 스트레칭

- 1 하늘을 보고 누워 아래쪽 다리는 펴고 위쪽 무릎을 90도로 굽혀 바깥쪽을 잡아준다.
- 2 천천히 안쪽으로 무릎을 당긴다.
- 3 깊게 호흡하며 10~15초 유지한 후,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 4 좌우측 교대로 6번 반복한다.



✓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옆구리 늘리기

- 1 양반다리로 앉아 두 팔을 양옆으로 뻗는다.
- 2 왼손을 바닥에 대고 오른손을 뻗어 옆구리를 늘려준다.
- 3 교대로 5~10번 반복한다.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01 중앙회 김영운 회장은 1월 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2020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영길·안상수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대한건설협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운 회장은 2020년은 총선과 업종개편 논의 등으로 분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건설업계도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강조했다.

02 중앙회(회장 김영운)는 1월 14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1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10대 건설사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발주자가 반영한 안전관리비가 원청을 거쳐 하청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을 요청하는 등 업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03 중앙회(회장 김영운)는 1월 29일 「건설 안전경영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건설단체장들을 대표해 '건설 안전경영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01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역대 최고치인 좌당 2만5,000원의 조합원 배당을 통해 경영성가로 인한 이익을 환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조합 역사상 최대치이자 배당수익률 2.7%를 기록한 이번 배당금 지급은 총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2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하여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안은 2,000억원 규모의 특별용자,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사 현장의 추가 보증수수료 면제, 선급금공동 관리 완화 등이며, 개별 조합원은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조합원이 보유한 출자좌수 당 20만원 이내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특별용자이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1.4%에서 최고 연1.5%까지 저리로 적용되고, 용자기간은 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대체 및 연장이 불가능하고 상환기일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반 용자와 달리 조합 가입 2년 이내 조합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회 2020년 2/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 자	주요일정	비 고
2020.05월 중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2020.05월 중	제28회 부산·광주광역시회 대표회원 합동 연수회	
2020.06.01.(월)	실적신고(2차) 재무제표 제출 마감(개인업체)	

※ 상기 일정은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건설업 교육을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중단기간 동안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영업정지기간을 감경(15일) 하는 등, 코로나19의 특수성 및 건설업계의 처분부담 경감을 고려한 처리 방법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 6개월 이내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 ~ 18:00) • **교육비용** : 150,000원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인터넷·팩스·전자우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 **교육 신청서 팩스 혹은 전자우편 전송 후 교육비 결제 (무통장 입금)**
 - **전송방법** : 팩스 02-3284-1066 / 전자우편 edukosca@naver.com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04 2020년 교육일정

1월	2월	3월	4월
10일(부산)	7일(대구)	4일(서울)	3일(제주)
14일(서울)	12일(서울)	13일(천안)	10일(부산)
17일(대전)	21일(광주)	20일(전주)	14일(서울)
31일(수원)	28일(창원)	24일(서울)	24일(순천)
		27일(안동)	29일(의정부)
5월	6월	7월	8월
12일(서울)	3일(서울)	3일(천안)	14일(서울)
15일(대전)	12일(원주)	10일(전주)	21일(의정부)
22일(수원)	19일(대구)	17일(울산)	28일(순천)
29일(광주)	23일(서울)	21일(서울)	
	26일(창원)	27일(안동)	
9월	10월	11월	12월
4일(수원)	8일(부산)	10일(서울)	4일(전주)
11일(전주)	14일(서울)	13일(광주)	11일(천안)
18일(제주)	23일(대전)	20일(대구)	15일(서울)
23일(서울)	30일(강릉)	27일(수원)	18일(창원)

05 교육대상

지 역	교 육 장 소
서 울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회의실)
부 산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대 구	대구문화방송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7층 컨퍼런스룸)
광 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7층 대회의실)
대 전	예람인재교육센터 (대전시 중구 동서대로 1304번길 33)
울 산	울산가족문화센터 (울산시 남구 대공원로 84)
수 원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장안구 수성로 311, 지하1층 대회의실)
의정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북부교육장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33번길 17)
원 주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지하1층 대강의실)
강 릉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2층 중회의실)
천 안	천안축구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
전 주	전주상공회의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7층 대강당)
순 천	순천만국가정원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국제습지센터 1층, 입체영상관)
안 동	안동상공회의소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3층 컨퍼런스룸)
창 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번지, 6층 소강당)
진 주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4층 세미나실)
제 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코로나19 관련 건설업 교육 한시적 중단 안내

01 주요내용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교육을 한시적으로 중단

02 중단기간

2020. 2. 24. ~ 별도 통보시까지

03 교육 미이수자 처리방법

중단기간 동안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제외
※ 다만, 교육 재개 시 2개월 이내 이수 의무

04 영업정지기간 감경 적용방법

교육중단이 해제되는 날(별도통보 예정)부터 2개월 이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15일 일괄 감경 처리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우

이방우 대표이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경제위기, 이를 반영하는 건설경기 성장률의 하락과 더불어 물고 무는 경제성장 악화로 인해 모두의 어깨가 축 쳐져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코스카레터를 통해 협회 소식과 다양한 건설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일회일비하기 보다는 지금을 기회로 삼고 자사 발전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면 합니다. 협회 및 회원사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대세건설

박정범 대표이사

코스카레터는 전문건설협회 소식지인 만큼 관련 전문건설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시공사례라도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세상사는 얘기도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더욱 알찬 코스카레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코스카레터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QUIZ!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주)장민건설 **김성부** 대표이사
- 진성디엔씨(주) **손성민** 대표이사

-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 2,000만원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Q 국토교통부에서 2020. 3.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2020.4.30.(목)**까지 응모하시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첨 증정)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근로자 수칙

근로자 예방수칙



작업 전·중·후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개인 작업복·보호구
사용으로 교차감염 예방하기



임신여성·장년근로자는
작업 중 마스크 꼭 착용하기



호흡밸브가 있는 방진마스크는

바이러스 등의 외부배출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예방용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작업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으로 먼저 상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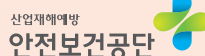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선별진료소 안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